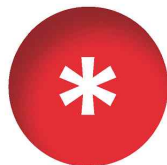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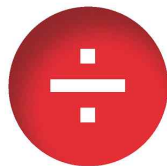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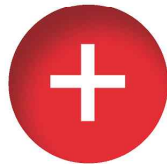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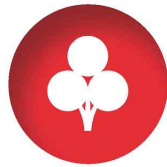


# 2021

## 배분사업 수행안내



전남 사랑의열매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환영의 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사업 파트너로서 교육에 참여해 주신  
수행기관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역사회의 변화창출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배분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수행 안내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배분관련 회규, 배분사업 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에 근거하여  
배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수행기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Contents



1. 배분사업 진행일정 및 세부 제출서류	3
2. 배분사업 수행 기본 원칙	7
3. 배분금 수입처리 절차	11
4.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19
5. 사업 및 예산변경 요청	53
6. 배분금 잔액 반납 및 환수 절차	61
7. 사업평가 및 기타사항	65
8. 구매 및 입찰	75
9. 문서 작성 및 관리	83
10. 차량지원사업 지침	87
11. 온라인배분신청시스템 사용안내	95
12. 개인정보보호 안내	107
13. 부록 : 사업관련 참고 양식	121
14. 자주 하는 질문	143





2021년 배분사업 수행안내

---

## 1. 배분사업 진행일정 및 세부 제출서류





# 1. 배분사업 진행일정 및 세부제출서류

## 가. 진행과정

(2021년 신청사업 기준)

순번	구분	일자	내용
1	수행안내교육실시	2021. 1.	- 수행안내교육 및 사업일정 안내
2	1차 사업비 지원	2021. 1월	- 1차 사업비 지원
3	사업기간	2021. 1. ~ 2021. 12.	- 사업진행
4	중간보고서 제출	2021. 6. 12.	- 중간보고서 제출 (정산기간 : 2021. 1. ~2021. 5.)
5	중간평가 실시	2021. 6. ~ 7월중	- 서류, 현장 평가
6	2차 사업비 지원	2021. 8월초 (예정)	- 중간평가 후 2차 사업비 지원
7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2022. 1월말	- 온라인배분신청시스템으로 제출 후 등기발송 - 사업결과보고서(사업관련 자료 포함), 정산보고서(현금출납부, 통장사본, 지출결의, 관련증빙 등 포함)
8	사업 및 회계 평가	2022. 2. ~ 3월중	- 사업 및 회계평가

나. 세부제출서류

(2021년 신청사업 기준)

순번	구분	제출시기	내용
1	사업계획서	사업시작 전	1. 조정사업계획서 및 배분사업 계약서 등 관련 서류 제출 2. 통장사본(신규통장의 경우 첫 장/ 기존 통장의 경우 첫 장과 잔액이 0원으로 정리된 마지막장), 발급받은 배분사업전용결제체크카드 사본
2	중간보고서	상반기 지원금 집행 경과 후	상반기 지원금 집행기간 동안의 사업내용을 작성한 중간보고서, 통장사본, 표준현금출납부 제출 - 제출일자는 1차 지원공문에 명시되어 있음 ※ 정산기간 : 2021. 1. 1. ~ 5. 31.
3	중간점검	2021. 6.	모금회에서 요청 시 사업진행현황 확인을 위한 중간보고서 제출 기능보강사업은 중간보고서 제출 없이 결과보고서 제출 ※ 기능보강으로 사업 종료된 기관은 최종평가 실시
4	결과보고서 제출	사업종료 후 1개월 내	1. 결과보고서 및 사업관련 자료 2. 회계정산서류 일체 1) 정산보고서 2) 현금출납부 3) 통장사본 4) 지출결의 및 관련증빙 (영수증, 사실확인증빙, 비교견적서 등) 3. 사업평가서류 일체 1)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사업관련 내부기안 3) 업무일지(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4) 프로그램 대상자 명단, 대상자 선정 파일 5) 회의자료 및 회의록 6) 사업관련 사진 7) 기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모금회가 요청한 서류 ※ 제출처는 지원금 공문 참조

※ 사업기간 1년인 프로그램 사업 기준.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 수행 시, 주요 관련 사항은 공문서를 통해 진행함.



2021년 배분사업 수행안내

---

## 2. 배분사업 수행 기본 원칙



## 2. 배분사업 수행 기본원칙

가. 모든 사업 내용과 과정기록, 예산집행은 사업계획서에 기반하여 행해야 함



□ 최종 확정된 조정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세부사업내용과 추진일정, 성과목표 및 예산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

□ 따라서, 사업 추진일정 및 세부사업 내용의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모금회와 협의 후 변경내역에 대해 동의를 요청하고 공문을 통해 동의에 대한 완료 후 변경된 내용에 의거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 사업계약서에 명시된 사업기간 동안에만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며, 사업 기간 연장을 한 경우에는 연장 기간까지 가능(\*사업기간 이후 예산집행 불가)
- 배분사업표준계약에 따라 모금회의 지원사업 관련 문서는 사업 종료 후 최소 5년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함.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지침(p.139)에 따라 처리함.

나. 모금회지원금 회계처리 기본 원칙

□ 배분지원금 : 모금회가 배분사업을 수행할 기관의 통장으로 보내주는 지원금

□ 회계처리 : 사업수행기관에서 모금회로부터 배분지원금을 받고, 해당 사업을 위해 집행·사업 종료 후 잔액(이자 포함)을 모금회로 반납하는 일련의 과정을 “모금회용 표준현금출납부(엑셀 양식)”에 입력하는 것

## □ 기본원칙

### 1. 구분경리

- 사업수행기관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기록
- 모금회 지원사업과 관련한 통장, 회계장부(총계정원장, 표준현금출납부), 증빙서류(수입/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별도 관리
- 2개 이상의 모금회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사업별로 구분하여 진행

### 2. 문서간 상호일치

- 통장의 입출금 내역, 표준현금출납부 및 증빙서류상 내용 상호 일치  
(지출결의서 기재 금액 = 통장사용 내역 = 표준현금출납부 입력 금액)
- 배분지원금 집행 전에 반드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결재

### 3. 관련 법규의 준수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근로기준법, 세법(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및 관련 법규, 지침 등을 준수

### 4. 특수 이해관계 거래 금지

- 특수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란,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에 있는 자(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주주·출자자 등 경영 지배관계에 있는 자 등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 2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5.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수행 및 예산집행

- 다음과 같은 경우, 배분금 지급중단·배분금 환수·일정기간 배분지원대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배분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주류 구입 등)
  - 서류에 중대한 허위가 있는 경우
  -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 수행 및 예산 집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 법령상 금지된 행위나 정치·종교적 목적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배분금을 사용한 경우 등



2021년 배분사업 수행안내

---

### 3. 배분금 수입처리 절차





### 3. 배분금 수입처리 절차

- 수입에는 모금회에서 지원되는 배분금과 배분금의 이자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있음

절 차	업무 내용	수행주체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사업수행기관
↓		
배분금 입금	배분지원금 입금	모금회
↓		
수입결의	「수입결의서」 작성/내부결재	사업수행기관
↓		
회계장부 정리	계정과목에 맞추어 현금출납부에 입금내역 기재	사업수행기관

#### 1) 모금회 배분금 입금 시 지정후원금 수입 처리함

- 예산항목

구분	관	항	목
명칭	후원금수입	후원금수입	지정후원금

- 모금회 배분금 입금 시 지정후원금으로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함.
  - 수입과목 설정 : 관-후원금수입, 항-후원금수입, 목-지정후원금
- 모금회 배분금은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기관의 지정후원금 수입으로 처리
  - 기관의 수입세목이 '지정후원금' 내에 세분화 되어있는 경우 사용가능
  - 기타보조금 및 비지정후원금 수입처리 불가능

<수입결의서 예시>

NO. \_\_\_\_\_

수 입 결 의 서					
		담 당	팀 장	부 장	관 장
수입과목	관	후원금수입		작성일	202x년 1월 2일
	항	후원금수입			수입일
	목	지정후원금수입			
수입금액	금 육백만원정		비 고		
	₩ 6,000,000원정				
적 요					
<p>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청사업 배분금 총 1천만원 중 상반기 배분지원비 (사업명 :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 프로그램)</p> <p>** 수입결의서 뒤에 첨부할 서류 : 통장사본 1부.</p>					

사랑의열매종합사회복지관

*※ 본 양식은 참고자료로 기관 자체양식이 있는 경우 자체양식을 사용*

## 2) 모금회 배분금 관련 이자 수입 발생 시 처리방법

사업 기간 내 이자 발생분 ▶ 수입결의서 작성 후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출  
사업 기간 외(잔여사업비 반납 이후) 이자 발생분 ▶ 기관 잡수입 처리함

- 배분금의 예치 시 발생하는 이자(카드포인트 등 기타수입 포함)는 사업비에 포함하여 사용함  
\* 기관의 잡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배분금에 포함하여 사용
- 배분금 수입과 동일하게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현금출납부에 세금공제 후 금액을 입력
- 사업종료 후 잔여 예산(또는 이자수입 미지출 내역)은 반납
- 사업비 잔액반납 후 발생하는 이자는 기관의 잡수입 처리함

## 3) 기타 지출 오류금액 재입금 처리방법

- 지출 오류금액을 재입금할 경우, 수입결의서를 작성하되 비교에 '재입금'으로 명시함.
  - 기 지출결의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아닌 "재입금"에 대해 새롭게 수입결의서를 작성
  - 수입결의서의 관, 항, 목은 당초에 작성했던 지출결의서의 관, 항, 목과 동일하게 기록하고 금액은 재입금 금액으로 작성, 비교란에 재입금 표시(증빙 불필요)
- 표준현금출납부에도 수입으로 작성하고 비교에 재입금으로 명시함.

### 재입금 상황!

- 배분사업전용결제카드를 사용해서 물품 등을 샀다가 취소한 경우
-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한 후 그 금액을 신용(체크)카드 결제계좌로 송금한 후에 거래를 취소하게 되어 다시 모금회 전용통장으로 그 금액이 입금된 경우
- 물품 등을 사고 상대방 계좌로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차후에 거래를 취소하고 다시 그 금액을 모금회 전용통장으로 입금 받은 경우
- 현금지급사유서를 작성하고, 현금을 지출 후 현금영수증, 지급증, 간이영수증 등을 받았다가 그 거래의 일부를 취소하고 환불 받은 경우
- 강사료 등을 송금했다가 다시 입금 받은 경우
- 어떤 이유로 실수로 다른 곳에 송금을 했거나, 다른 금액을 송금한 후 되돌려 받는 경우
- 기타 강사료 또는 회의참석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현금 인출해서 지급하려고 준비해 두었는데, 강사 또는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이를 받지 아니해서 다시 입금하는 경우 등

[예시1] 8천원을 지출결의를 하여 결재하였으나, 5천원만 쓰고 3천원을 취소한 경우

NO. 4

수 입 결 의 서					
		담 당	팀 장	사무국장	회 장
		이담당	/	/	김대표
지 출 과 목	관	사업비		작성일 (지출일)	20XX년 4월 15일
	항	사랑의 열매 회계관련 교육사업		지급일 (지원금 인출일)	20XX년 4월 15일 (적요란 참조)
	목	100인 교육 프로그램			
지 출 금 액	금	삼천 원정		비 고	
	₩	3,000 원정		(재입금)	
적 요					
회의를 겸한 다과준비를 위해 인출했던 8천원 중 남은 금액인 3천원을 여입함					

<표준현금출납부>

번호	증빙일자	증빙종류	증빙금액	거래처명	내역	결의서번호	세목	계정명	유형	근거자료
1	4/15	수입결의서	3천원	정류장슈퍼마켓	다과비 재입금	4	다과비	회의 다과비 준비	재입금	-

[예시2]

지출해야할 금액	지출금액	오류금액(재입금)
전화사용료 2만원 난방사용료 4만원 전기료 5만원	전화사용료 3만원 난방사용료 5만원 전기료 6만원	전화사용료 1만원 난방사용료 1만원 전기료 1만원



- 지출결의서는 한 장에 각각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
- 지출과 관련해서 표준현금출납부에는 증빙이 3개이므로 각각 전화 사용료 3만원, 난방사용료 5만원, 전기료 6만원이라고 기록
- 총 3만원을 돌려받아 통장에 재입금
- 재입금 사항은 수입결의서 한 장에 각각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
- 재입금과 관련해서 표준현금출납부에는 당초에 기록한 회계처리가 3개이기 때문에 3줄에 각각 전화사용료 1만원, 난방사용료 1만원, 전기료 1만원 기록



<표준현금출납부>

번호	증빙일자	증빙종류	증빙금액	거래처명	내역	결의서번호	세목	계정명	유형	근거자료
23	4/20	세금계산서	3만원	전화국	3월 전화료	5	관리 운영비	공공요금	인출	-
24	4/20	세금계산서	5만원	관리실	3월 난방비	5	관리 운영비	공공요금	인출	-
25	4/20	세금계산서	6만원	한국전력	3월 전기료	5	관리 운영비	공공요금	인출	-
26	4/20	세금계산서	1만원	전화국	3월 전화료	6	관리 운영비	공공요금	재입금	-
27	4/20	세금계산서	1만원	관리실	3월 난방비	6	관리 운영비	공공요금	재입금	-
28	4/20	세금계산서	1만원	한국전력	3월 전기료	6	관리 운영비	공공요금	재입금	-





2021년 배분사업 수행안내

---

## 4.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 4.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절 차	업 무 내 용
내부기안(또는 품의서) 작성/결재	지출 내용에 대한 내부기안(또는 품의서) 작성/결재
↓	
지출 행위 발생	기안 또는 품의서에 근거하여 지출
↓	
지출결의서 작성 / 결재	증빙을 첨부하여 지출결의서 결재
↓	
현금출납부 기록	현금출납부에 지출내역 기재
↓	
회계서류 및 증빙자료 편철	영수증, 견적서 등 관련서류 일체를 편철함

### 1. 적격증빙 수취 우선순위

#### 증빙 원칙

-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기장의 증거가 되어야 함

적격증빙자료	내용
① 배분사업전용체크카드 매출전표	카드전표 증빙으로 첨부, 배분금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만을 의미하므로 개인 혹은 법인카드는 사용불가
② 세금계산서(일반과세자)	수기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세금계산서 오른쪽 맨 아래에 “영수함”이라고 쓰여 있으면 그 자체로 적격증빙이지만, “청구함”이라고 쓰여 있다면 이체내역이 나와 있는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이체확인증이 있어야 적격증빙이 됨
③ 계산서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업체가 일반과세자가 아닌 경우 계산서 발급
④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발급 시 번호는 개인의 번호가 아닌 기관이나 단체의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로 발급. 또한 ‘현금지급사유서’를 작성하고 첨부



### ☞ 기타 지출사항에 대한 증빙

- 상대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고, 카드결제도 할 수 없는 개인인 경우  
→ 현금으로 지급 후 지급증(모금회 양식)을 수취, 현금지급사유서를 사업담당자가 작성  
→ 상대방 계좌로 송금 후 이체확인증 첨부
- ※ 배분지원금 지출시 세법상 인정되는 적격증빙을 첨부하도록 권고

## 2. 지원금 지출의 원칙

- 지원금 지출은 기관명의로 모금회 지원사업 전용 결제카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불가피한 현금사용 시에는 지출결의서에 현금지급 사유를 명시하고, 기관/단체의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수령함(\*\*개인소득공제용 영수증 인정 불가)
- ※ 모든 지출은 관련 내용의 내부기안과 그 기안을 근거로 한 지출결의서가 있어야 하며, 산출내역을 명시하여야 함.

## 3. 증빙자료 구비원칙

- 지출 1건 1문서주의 원칙에 따라 예산계획의 ‘목’ 구분(인건비/사업비/관리운영비)에 따라 ‘목’ 단위 지출 건에 대하여 하나의 지출결의서, 내부기안, 적격증빙(현금지급사유서). 근거자료, 사실확인 자료 등을 편철
- 편철순서 : 날짜 순서로 편철. 지출결의서→내부품의서→영수증→기타증빙서류
  - 지출결의서는 “지출일자별”, “목”이 달라질 때 새로 작성
  - 표준현금출납부는 1증빙 1회계처리의 원칙에 따라 기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빙 1개당 1줄을 입력
  - 표준현금출납부에 입력되는 지출결의서 번호, 첨부된 증빙의 금액, 날짜, 거래처 등 모든 내용이 증빙자료와 일치
- 모든 지출은 관련 내용의 내부기안과 그 기안을 근거로 한 지출결의서가 있어야 함
  - 지출결의서는 예산상의 항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함.
  - 지출결의서의 금액은 실제 지출한 금액(영수증 등 증빙자료)과 일치해야 함
  - 한 건의 기안에 2개 이상의 목에 대한 지출이 있을 경우는 지출결의서를 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지출관련 기안문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에는 복사하여 첨부한 후 세목별로 편철함.
  - 한 건의 기안에 2개 이상의 동일 세목에 대한 지출이 있을 경우는 1개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
- 지출결의서는 통장일자 기준으로 편철하고 수입결의서는 별도로 관리함

#### 4. 이체수수료와 식대

- 발생한 사유에 따라 해당 목에 편성하여 지출함.

인건비 송금관련 이체수수료 ▸ 인건비  
 사업수행을 위한 물품대금 송금관련 이체수수료 ▸ 사업비  
 A교육을 위해 먹은 식대 ▸ A교육사업비

#### 5. 예산집행 관련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자료집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랑의 열매 로고사용, ‘후원’이 아닌 모금회 ‘지원사업’임을 명시</li> <li>□ 공동사업으로 할 경우 출판물 판권은 반드시 모금회와 사전협의</li> <li>□ 지원사업과 관련한 출판물의 저작권은 모금회에 있음</li> <li>□ 예산 지출시 자료집 등 인쇄출판물 사진을 찍어 첨부</li> </ul>
현수막/ 기념품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랑의 열매 로고사용, ‘후원’이 아닌 모금회 ‘지원사업’임을 명시</li> <li>□ 보고서 등 증빙자료 제출 시 현수막 부착된 전체 사진 첨부</li> </ul>
지원금을 타 기관/단체에 지원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비 집행 시 지역 내 타 기관 및 단체에 ‘지원’하는 형태의 지출은 반드시 해당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포함한 사업집행 내용과 현금출납부, 지출관련 증빙이 첨부되어야 함</li> </ul>
장비 또는 비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기본자산이 되는 범용성 기자재 구입은 지양</u>하며, 필요시 사전에 모금회 담당자와 협의</li> <li>□ <u>장비취득이나 30만원 이상의 비품의 경우</u> 비품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li> </ul>

※ 배분금을 1차로 지원받은 기관이 다시 2차 또는 3차 기관에 배분금을 지원하는 경우, 각 하위 기관들이 동 회계처리지침을 반드시 준수하고 이에 따라 회계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고, 본 회계지침에 대한 내부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모금회에 자료 제출시 해당 기관의 지출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함.

## 6. 지출내역별 추가 증빙 서류

항목	추가 구비서류
사업담당자 인건비	급여명세서, 4대 보험 영수증(본인 부담금 표시), 계좌이체 확인증, 직무내역서 ※ 신규 채용 시는 근로계약서, 채용 관련서류 함께 제출
단순인건비	활동비 지급증, 계좌이체 확인증, 근무일지 ※ 유급내부직원에게는 지급 불가
강 사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 강의 : 강사이력서, 강사비 지급증, 세금계산서 혹은 계좌이체 확인증</li> <li>온라인 강의 : 강사이력서, 온라인 강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혹은 계좌이체 확인증, 강의 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li> </ul>
회 의 비	회의록, 회의비 지급증, 계좌이체 확인증
자 문 비	슈퍼비전 기록지, 자문비 지급증, 계좌이체 확인증
자원봉사활동비	활동비 지급증(활동내역 및 산출근거 기재), 계좌이체 확인증
출 장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통 : 출장결과보고서</li> <li>교통비 등 실비 지급 시 : 카드매출전표</li> <li>일비 등 정액 지급 시 : 계좌이체 확인증</li> </ul>
워 크 쉵	워크숍 계획서/결과보고서(사진 포함)
행사비 지출	카드매출전표 혹은 세금계산서
자료집 제작	비교견적서(또는 전자견적, 입찰관련 서류),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증(세금계산서 수령 시), 자료집 사진(전체 수량이 보이게 촬영)
물품제작/구입	비교견적서(또는 전자견적, 입찰관련 서류),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증(세금계산서 수령 시), 구입물품 전체 사진(설치물의 경우 설치된 사진)
현수막 제작	카드매출전표 혹은 세금계산서, 실제 부착된 현수막 전체사진
비품 구입	비교견적서(또는 전자견적, 입찰관련 서류),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매출전표, 비품관리대장(구매한 부품이 포함된 쪽 사본), 비품 사진

- ※ 제작품(자료집, 현수막, 홍보물 등), 기본 재산성 물품(책상, 카메라 등)은 반드시 실물사진을 첨부  
단, 소모품(다과, 문구류 등)은 총 50만원 미만의 경우 사진 생략이 가능함
- ※ '강사비 및 기타 경비 예산편성 기준표'에 명시된 항목은 내부기안에 산출내역 기재
- ※ 지출내역이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 원천징수 후 관련 영수증 첨부(강사비, 회의비, 자문비 등)
- ※ 구매입찰의 경우, 선금을 지불한 경우 반드시 선금지급보증서를 첨부
  - 선금지급보증서: 선금을 받은 계약당사자가 선금을 지불한 사람에게 교부하는 서류로 지급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함. 계약금액과 보증기간, 선급금액 등을 기록함.
- ※ 자원봉사활동비: 지급증 첨부(활동명, 활동시간 및 지역, 소요비용, 산출근거 반드시 기재)
  - 교통비, 식사비 명목으로 지급 가능하며, 실비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급

## 7. 원천징수

### 원천징수란

소득세 및 법인세에 있어서 납세방법의 일종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당해 소득의 수취자인 납세의무자로부터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일정 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

- 전담직원 인건비 및 4대 보험은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 강사비 등 기타소득을 구성하는 지출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
  - 근로소득은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다운받아 소득세 원천징수액 확인(국세청 대표상담전화: 126)
- ※ 대가를 받는 자(강사 등)를 기준으로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함.
- 기타소득: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  
월 지급총액이 12만 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8.8%를 원천징수  
(예: A회계법인에 고용된 회계사가 B복지관에서 1일 강의를 진행한 경우)
  - 사업소득: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지급액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지급액의 3.3%(주민세 포함)을 원천징수  
(예: 프리랜서 미용사가 B복지관에서 프로그램 강의를 진행한 경우)

## 8. 제작물 제작 관련

- 현수막, 전단지, 포스터, 자료집 및 제작물, 홍보물 등 제작 시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임을 명시하거나 로고 삽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의3. 배분자의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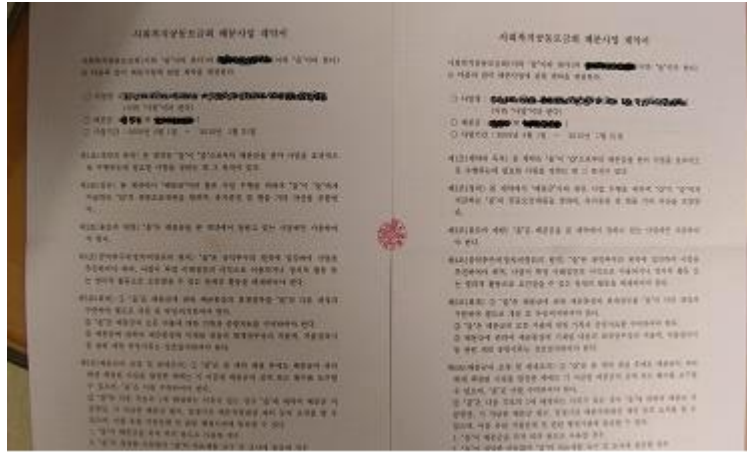
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하는 경우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전남모금회 홈페이지**(<http://jn.chest.or.kr>)Home>공동모금회소개>사랑의열매(C)란 메뉴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사업 명시 예문  
· '○○○ 사업'은 □□□ 기부자의 이웃돕기성금으로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합니다.  
· '○○○ 사업'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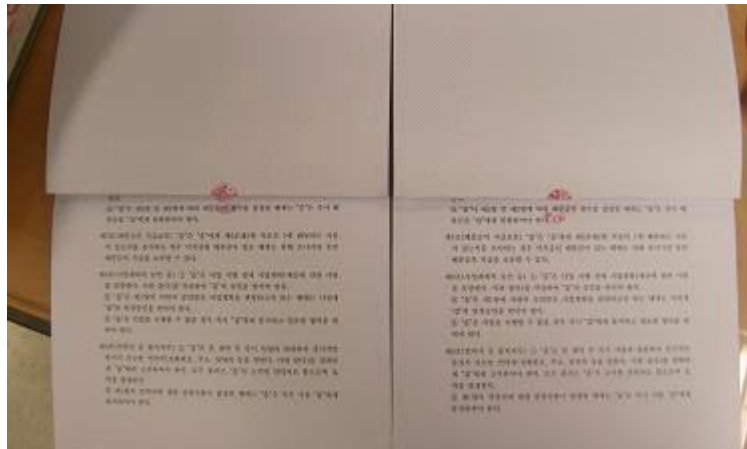


## 9. 계약서 날인 방법

-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2부 준비합니다.
- 계약서 2부를 좌우 나란히 붙여놓고 두 계약서의 사이에 직인을 날인합니다.(1페이지만)



- 각 계약서마다, 한 장을 상하방향으로 반으로 접어서 윗 장의 뒷면과 다음 장의 앞면에 기관대표 직인을 겹쳐서 날인합니다.(2page부터 끝까지 모든 페이지마다)



- 계약서의 마지막 장 기관 서명란에 직인을 날인합니다.
- 동일하게 작성된 계약서 2부를 모금회로 등기 발송해 주십시오. 이후 같은 방법으로 날인하여 1부는 모금회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한부는 발송해드리겠습니다.

### ※ 참고사항

- 본 계약서는 본 회의 법률자문을 거쳐 발송된 것으로 수정이 불가하며 1면 인쇄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서 날인 대신 ‘전동인증기’ 사용도 가능합니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1페이지의 두 계약서 사이의 날인’ 및 맨 마지막 페이지 ‘기관 서명란 직인 날인’은 필수입니다.
- 계약 체결이후 사업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10. 강사비 및 기타 경비 예산편성 기준표

항목	기준	사용한도	비고
강 사 비	<b>특별 강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현직 장/차관(급) 이상</li> <li>• 전/현직 대학총장(급)</li> <li>• 전/현직 국회의원</li> <li>• 대기업 총수(회장) 또는 국영기업체장</li> <li>• 활동경력 30년 이상의 문화예술, 시민단체, 기업교육 전문직 종사자</li> <li>•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로 모금회가 인정하는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시간 최대 350,000원</li> <li>• 초과 매시간당 최대 150,000원</li> </ul>	
	<b>1급 강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li> <li>• 인간문화재, 유명예술인 및 종교인</li> <li>• 정부출연 연구기관장</li> <li>•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li> <li>•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li> <li>•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4/5급 공무원</li> <li>• 사회복지 기관·시설장</li> <li>•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 시민단체, 기업교육 전문직 종사자</li> <li>• 기타 모금회가 인정하는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시간 최대 250,000원</li> <li>• 초과 매시간당 최대 150,000원</li> </ul>	* 유급의 내부직원에게는 지급 불가 (동일법인이라도 사업장 위치가 다르고 독립회계를 하는 타 기관의 직원인 경우에는 지급 가능)
	<b>2급 강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li> <li>• 전·현직 4/5급 공무원</li> <li>• 중소기업체 임원급</li> <li>•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li> <li>• 인간문화재·유명예술인 등 보조출연자</li> <li>• 통계이론, SAS, SPSS 등의 전문가</li> <li>• 박사학위소지자</li> <li>• 특별강사, 일반 1급 및 일반 3급을 제외한 자</li> <li>• 사회복지 기관·시설 중간관리자로서 관련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소지한 자</li> <li>•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시민단체, 기업교육 전문직 종사자</li> <li>• 기타 모금회가 인정하는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시간 최대 230,000원</li> <li>• 초과 매시간당 최대 120,000원</li> </ul>	* 강의에 필요한 교재의 원고료, 강사 교통비(실비)는 필요사유에 따라 별도 지급 가능
	<b>3급 강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li> <li>• 전임이외의 외래시간 강사</li> <li>•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li> <li>• 체육, 레크레이션 등 전문강사</li> <li>• 사회복지 기관·시설 중간관리자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가 없는 자</li> <li>•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 시민단체, 기업교육 전문직 종사자</li> <li>• 기타 모금회가 인정하는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시간 최대 170,000원</li> <li>• 초과 매시간당 최대 100,000원</li> </ul>	* 온라인 강의 강사비 지급기준은 p.29 참고



항 목		기 준	사용한도	비고
강 사 비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1시간 최대 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최대 30,000원	* 유급의 내부직원에게는 지급 불가 (동일법인이라도 사업장 위치가 다르고 독립회계를 하는 타 기관의 직원인 경우에는 지급 가능)  * 자원봉사자 활동비는 봉사활동에 실제 소요된 경비에 한해 지급(임직원 자원봉사 활동비 제외) 지급증 필수 첨부(활동명, 활동시간 및 지역, 소요비용 및 산출근거 표기)
	다수인 출강	• 2시간 이하	• 5인 이하 최대 33만원 • 6~10인 최대 45만원 • 11인 이상 최대 66만원	
• 2시간 초과		• 5인 이하 최대 38만원 • 6~10인 최대 55만원 • 11인 이상 최대 80만원		
회의참석비		• 2시간 이하 • 2시간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함)	• 100,000원 • 130,000원	
단순인건비		• 1인/1일 (1일 8시간 기준/ 중식비 포함) ※ 월 60시간, 1개월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가입필수	• 단순인건비 77,260원 (중식비 7,500원 포함) • 주휴수당 69,760원 ※ 2021년 최저임금 반영	
자원봉사자 활동비		• 자원봉사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 식사비 등의 활동비(1회 기준, <b>실비지급</b> )	• 30,000원 이하	
원고료		• A4용지 1매 기준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300단어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슬라이드 3면을 A4 1면으로 산정 - 원고지로 작성한 경우에는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1면으로 산정	• 12,000원  * 시간당 6매까지만 인정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출장여비		• 시내여비	• 실비	* 일비, 식비는 해당 시·도를 벗어나는 출장에 적용 *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동일시와 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밖으로의 출장이며, 왕복 거리가 12km 이상인 출장에 대해 시외출장 적용. 단, 육로 120km(왕복) 또는 수로 60km(왕복) 미만의 출장에 있어서는 일비의 전액과 식비의 3분의 1만을 지급 * 기관차량 이용 시 일비의 2분의 1만을 지급 * 출장지에서 식사가 제공되는 경우 해당 식비를 제외하고 지급 (예. 교육 참석 차 왕복 120km 이상의 지역으로 시외출장 시 점심식사가 제공되는 경우 식비의 2/3만 지급)
		교통비 (KTX일반, 고속버스, 전세버스 등)	• 실비	
		일비(1인 1일)	• 20,000원	
		• 시외여비	식비(1인 1일)	
		숙박비(1인 1실)	• 실비(상한액 50,000원)	

항 목	기 준	사용한도	비고
워크숍	• 1인 기준	• 100,000원	* 1박2일 기준(숙박비, 식비) * 숙박일수 추가 시 추가되는 일수 당 기준단가 적용 * 진행비(교통비, 대관료 등) 실비 적용하여 별도 편성 * 사용한도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모금회의 사전 승인 필요
식사비	• 1인 기준	• 15,000원	
다과비	• 1인 기준	• 7,500원	
자문비	• 2시간 이하	• 1회 100,000원	* 슈퍼비전기록 필히 첨부 * 내부직원 지급 불가 * 시외의 경우, 교통비 실비지급 가능 * 1일 상한액 20만원
	• 2시간 초과	• 1회 130,000원	
	• e-mail 자문(유선포함)	• 20,000원(1회당)	
	• 공통사항 : 자문 내용 기본 양식 A4 용지 1매 기준, 글씨크기 13 point, 줄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25, 머리말·꼬리말 15		
번역료	• 한국외대 통번역센터 요율표 기준 (매해 발표되는 기준 참조, 시행시점 가장 최근 자료 이용) ※ 단, 전문기관 등에게 의뢰하여 작성된 원고 및 통·번역자료에 대해서는 별도계약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본 기준표에 제시된 금액은 최대로 사용 가능한 한도 금액으로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 가능

### 1. 초과시간의 계산 방법

- 동일 강사가 상이한 2개 이상의 강의를 했을 때, 교과목별로 기본시간과 초과시간을 계산함  
(같은 날, 상이한 과정·과목을 강의하더라도 교과목별로 기본시간과 초과시간을 계산)
- 동일 강사가 2일 이상에 걸쳐 동일 과정·같은 과목을 강의 했을 때, 제2일차는 초과시간으로 계산함

### 2. 다수인 출강

- 하나의 프로그램에 2인 이상의 강사가 참여하는 교육

### 3. 자원봉사활동비

- 실비개념으로 봉사활동에 실제 소요된 경비에 준하여 3만원 한도 내로 지급.

## < 온라인 강의 강사비 지급기준 >

유형	강의 방식	지급 단가	비고
녹화형 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프라인 강의를 그대로 촬영하여 사이버 강의화한 콘텐츠</li> <li>- 강사가 콘텐츠 제작을 위해 별도로 원고를 작성하고 직접 출연하여 제작한 콘텐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프라인 강의 강사료</li> <li>- 강사출연비 : 시간당 10만원 이내</li> <li>※ 최종 편집된 영상의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사출연비는 강사의 촬영 동기 요인 강화 및 다회 노출 부담에 대한 보상</li> <li>- 녹화된 영상을 반복 없이 1회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사출연비를 지급하지 않음</li> </ul>
실시간 라이브 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사와 강의대상이 특정 시간에 원격 강의에 참여하여 진행하는 방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프라인 강의 강사료</li> <li>※ 최종 편집된 영상의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간 라이브를 녹화하여 반복 사용하는 경우에는 녹화형 강의에 준하여 강사출연비 지급</li> </ul>

- 주) 1. 상기 기준은 지급 가능한 최대금액으로 강의의 난이도, 내용 등에 따라 제시된 한도 내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2. 영상물의 저작권에 관하여 붙임의 양식에 따라 강사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콘텐츠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저작권)는 기 체결한 배분사업 표준계약에 의거, 수행기관과 모금회에 귀속됨.
3. 강의시간은 최종 편집된 영상에서 강의가 진행된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참여자의 시청 편의를 위하여 영상을 분할 편집한 경우에는 총 영상 시간의 합으로 계산함.  
예) 강의 전후로 기관소개 영상 등을 포함한 경우, 강의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음.
4. 강사료 및 강의출연비에 대한 비용 산출 시 1시간 이하는 1시간으로 계산하되, 30분 이하는 0.5시간으로 산정하여 기준 단가의 2분의1 한도 내에서 지급함.
5. 강사가 제작한 강의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상기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6. 영상물 제작시 모금회의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된 영상임을 표시하여야 함.  
예) “강의명” 영상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고삽입)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7. 지원사업으로 제작한 영상을 통한 광고·수익 창출은 불가함.

<내부기안 예시(예산집행품의- 지출원인행위)>

## 사랑의열매종합사회복지관

수신인 : 내부결재

제 목 : 공동모금회 지원사업(202x년 신청사업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사업”) 시행의 건

공모배분 202x-256호(202x. 1. 20)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1) 사 업 명 :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사업
- 2) 사업기간 : 202x.1.1 ~ 202x.12.31
- 3) 사업내용 :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사업
- 4) 총지원금 : 총12,000,000원
- 5) 세부내용 : 별첨 계획안 참조
- 6) 지출근거 : 관)사업비 향)후원사업비 목)청소년복지사업비

- 별첨 1.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사업계획서 1부  
2. 모금회 지원결정 공문 사본 1부. 끝.

## 사랑의열매종합사회복지관장[직인]

담당	문서작성자	과장	성명	부장	성명	기관장	성명
협조자							
시행	문서번호 (시행일자 연. 월. 일 기재)			접수	( . . )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담당자전화		전송		담당자이메일			

<내부기안 예시(예산집행품의- 지출원인행위)>

## 사랑의열매종합사회복지관

수신인 : 내부결재

제 목 : 공동모금회 지원사업(202x년 신청사업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사업”) 강사료 지급

본 복지관 가족복지팀에서는 202x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강사료를 지급하고자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 프로그램
2. 일 시 : 202x. 4. 1(수) ~ 202x. 6. 3.(수)  
오전 9시30분 ~ 12시30분 총 4회
3. 내 용 : 자원봉사 기초교육
4. 강 사 : ○○○ (○○자원봉사센터 소장)
5. 강사료 : 600,000원(50,000원× 3시간× 4회)
6. 지급방법 : 무통장 입금 (우리은행 / 015-○○-○○○○○)
7. 지출근거 : 관> 사업비 항> 후원사업비 목>청소년사업비

## 사랑의열매종합사회복지관장[직인]

담당	문서작성자	과장	성명	부장	성명	기관장	성명
협조자							
시행	문서번호 (시행일자 연. 월. 일 기재)			접수	( . . )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담당자전화		전송		담당자이메일			

<지출결의서 예시>

NO. \_\_\_\_\_

지 출 결 의 서					
		담 당	팀 장	부 장	관 장
지출과목	관	사업비		작성일	202x년 1월 5일
	항	후원사업비			
	목	청소년사업비		지급일	202x년 1월 5일 (적요란 참조)
지출금액	금 육십만원정			비 고	
	₩ 600,000원정			배분지원금	
적 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사업 (사업명 :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 프로그램) - 자원봉사 기초교육 강사료 : 600,000원(50,000원× 3시간× 4회) - 지급방법 : 무통장 입금  ** 지출결의서 뒤에 첨부할 증빙자료 : 계좌이체 확인증 강사료 지급증 내부기안 사본					

## 11. 인건비 목 회계처리

### 가. 인건비목 유의사항

구분	내용
인건비 계상	급여, 상여, 각종 수당 등 종류에 관계없이 전담직원에게 고용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
4대보험	전담직원은 근로기간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직원부담금은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사용자부담금은 기관 자부담이 원칙이나, 모금회 승인시는 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원천징수	전담직원에게 인건비 등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퇴직적립금	1년 이상 근무시 퇴직적립금을 포함해야 하며, 사용자부담금을 인건비로 지원할 수 있음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담직원이 ‘강의, 원고작성, 회의 참석, 행사도우미’ 역할을 수행하였을 경우 전담직원에게 ‘강의료, 원고료, 회의참석비’ 등 추가로 지급할 수 없음</li> <li>인건비목에 대한 예산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li> </ul>

※ 전담직원이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배분금지원을 받아 해당사업 수행만을 위하여 고용된 직원임.

\* 시간외수당은 프로그램 및 서비스제공이 정규근무시간외에 진행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관련증빙자료(프로그램계획서, 업무일지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함.

## 나. 급여 지급처리

구분	내용
급여 계산	월 급여액은 기본급, 상여, 수당 등을 모두 포함
급여 지출결의서	급여지급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퇴직적립금처리, 4대 보험 이행과 함께 1장에 기록
급여송금	퇴직적립금과 4대보험 이행과 함께하며, 급여는 원천징수액을 빼고, 4대보험을 뺀 금액을 해당 직원에게 송금 (전담직원 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송금 원칙)
급여증빙	은행입금증과 직원의 급여를 계산한 ‘직원인건비 지급내역표’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계평가시 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급여대장, 전담 직원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발행자보관용)을 따로 제출</li> <li>“모금회 배분금 + 기관 자부담”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관련 기안 및 지출결의서에 각각의 금액을 구분하여 명기</li> </ul>

## 다. 퇴직적립금

구분	내용
적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퇴직금은 수행인력 월급여의 1/12을 매월 적립하거나 또는 1개월의 급여를 12개월마다 적립하여야 하며, 퇴직금 적립을 위하여 별도의 통장을 개설 (기관의 퇴직금 적립통장이 있을 경우 해당 통장 사용가능)</li> <li>퇴직금 적립은 모금회의 배분지원금으로 인건비의 전액을 지급받는 인력만 적립</li> </ul>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담 인력이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 후 퇴사할 경우에는 적립했던 퇴직금은 사업종료 후 반납</li> <li>1년 이상 연속 근로한 전담 인력이 퇴사할 경우 퇴직 시점까지 적립된 퇴직금을 지급</li> </ul>
증빙	계좌이체 확인증



#### 라. 4대 보험

- 4대 보험 가입확인서(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 또는 4대 보험 납부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
- 소득세, 주민세 납부에 대한 증빙은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대장' 제출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4대 사회보험 포털 서비스 홈페이지(<http://www.4insure.or.kr>) 참조
- 문의처

구 분	전화번호
국민연금	(국번 없이) 1355
건강보험	1577-1000
고용보험	1544-1350
산재보험	1588-0075

#### [예시]

성명	월 급여액	소득세 주민세	4대 보험 (직원부담)	실지금액	4대보험 (사용자부담)	퇴직적립금
이담당	300만원	96,830원	246,500원	2,656,670원		
박직원	200만원	21,190원	161,500원	1,817,310원		
김사원	100만원	0원	76,500원	923,500원		
합계	600만원	118,020원	484,500원	5,397,480원	700,000원	500,000원

→ 4대보험(직원부담+사용자부담)과 소득세, 주민세 예수금 통장으로 송금

→ 지출증빙은 이체확인증

<지출결의서>

NO. 4

<b>지 출 결 의 서</b>																														
		담 당	팀 장	사무국장	회 장																									
		이담당			김대표																									
지 출 과 목	관	사업비		작성일 (지출일)	202x년 5월 1일																									
	항	사랑의열매 회계관련 교육사업		지급일 (배분금 인출일)	202x년 5월 1일 (적요란 참조)																									
	목	인건비																												
지출 금액	금 칠백이십천오백 원정			비 고																										
	₩ 7,201,500원정																													
<b>적 요</b>																														
<b>202x년 4월분 인건비</b>																														
[인건비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세목</th> <th style="width: 20%;">세세목</th> <th style="width: 20%;">금액(원)</th> <th style="width: 45%;">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전담인력</td> <td style="text-align: center;">급여</td> <td style="text-align: right;">6,000,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아래표 참조</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퇴직적립금</td> <td style="text-align: right;">500,000</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대 보험</td> <td style="text-align: right;">700,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사용자 부담</td> </tr> <tr style="background-color: #e0e0e0;"> <td style="text-align: center;">이체수수료</td> <td style="text-align: right;">1,500</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총 인건비목</td> <td style="text-align: right;">7,201,500</td> <td></td> </tr> </tbody> </table>						세목	세세목	금액(원)	비고	전담인력	급여	6,000,000	아래표 참조	퇴직적립금	500,000		4대 보험	700,000	사용자 부담	이체수수료	1,500		총 인건비목	7,201,500						
세목	세세목	금액(원)	비고																											
전담인력	급여	6,000,000	아래표 참조																											
	퇴직적립금	500,000																												
	4대 보험	700,000	사용자 부담																											
	이체수수료	1,500																												
	총 인건비목	7,201,500																												
[급여세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성명</th> <th style="width: 15%;">월급여액</th> <th style="width: 20%;">소득세, 주민세</th> <th style="width: 15%;">4대 보험예수</th> <th style="width: 40%;">실지금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이담당</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d style="text-align: right;">96,830원</td> <td style="text-align: right;">246,500원</td> <td style="text-align: right;">2,656,67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박직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만원</td> <td style="text-align: right;">21,190원</td> <td style="text-align: right;">161,500원</td> <td style="text-align: right;">1,817,31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김사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d style="text-align: right;">76,500원</td> <td style="text-align: right;">923,5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합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만원</td> <td style="text-align: right;">118,020원</td> <td style="text-align: right;">484,500원</td> <td style="text-align: right;">5,397,480원</td> </tr> </tbody> </table>						성명	월급여액	소득세, 주민세	4대 보험예수	실지금액	이담당	300만원	96,830원	246,500원	2,656,670원	박직원	200만원	21,190원	161,500원	1,817,310원	김사원	100만원	0	76,500원	923,500원	합계	600만원	118,020원	484,500원	5,397,480원
성명	월급여액	소득세, 주민세	4대 보험예수	실지금액																										
이담당	300만원	96,830원	246,500원	2,656,670원																										
박직원	200만원	21,190원	161,500원	1,817,310원																										
김사원	100만원	0	76,500원	923,500원																										
합계	600만원	118,020원	484,500원	5,397,480원																										
첨부: 직원별 인건비 지급내역, 계좌이체 확인증, 4대보험영수증, 직무내역서					<b>← 매우 중요!</b>																									

☞ 지출처리

통장종류	금액(원)	비고
각 직원들의 통장	5,397,480	총 3건
퇴직적립금 통장	500,000	
예수금 통장	1,302,520	4대 보험(직원+기관), 소득세, 주민세
이체수수료	1,500	직원급여 이체 시 발생
합계	7,201,500	총 인건비목의 합계와 일치

※ 이체수수료도 지출결의서에 반영

## 12. 사업비 목 회계처리

### 가. 식사비

- 식사비 지출 시에는 ‘강사비 및 기타 경비 예산 편성 기준’을 준수
- 식사비가 예산편성기준이 정한 기준을 넘지 않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식사비 산출표를 작성 (산출표는 지출결의서 내 기재하거나, 별도 작성하여 지출결의서에 첨부)

#### <식사비 산출표>

참석자수	총 식사비	평균 식사비
4명	52,000원	13,000원

#### <지출결의서>

NO. 5

지 출 결 의 서					
		담 당	팀 장	사무국장	회 장
		이담당			김대표
지 출 과 목	관	사업비		작성일 (지출일)	202x년 2월 1일
	항	사랑의열매 회계 관련 교육사업		지급일 (배분금 인출일)	202x년 2월 1일 (적요란 참조)
	목	더 나은 모금회 회계연구 프로그램			
지출 금액	금 오만이천 원정			비 고	
	₩ 52,000 원정				
적 요					
연구회의 식사비 지출					
지급방법: 체크카드					
지출내용: 회의 시 외부참석자 식사비					
첨부: 카드매출전표, 식사비 산출표, 내부기안, 회의록					

<표준현금출납부>

번	증빙일자	증빙종류	증빙금액	거래처명	내역	결의서번호	세목	계정명	유형	근거자료
1	2x.2.1	카드전표	52,000	맛좋은식당	회의외부참석자식사비	5	더나은모금회 회계연구프로그램	식사비	인출	식사비산출표

→ 하루에 두 번의 식사비 지출이 있었다고 하면, 지출결의서는 한 장에 작성해도 되지만, 증빙은 두 장일 것이므로 표준현금출납부에도 2줄로 각 증빙 당 한 줄씩 기록

나. 교통비

- 교통비는 출장목적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비만 지급가능(\*근무지 출퇴근은 불가)
- 교통비 지출시에는 '강사비 및 기타 경비 예산 편성 기준'을 준수
- 교통비는 실비이므로 출장 후 승차권 관련 증빙으로 제출
- 지출결의서에는 출장일자, 출장내용, 출장자 등이 기재, 복귀 후 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실제 출장을 다녀왔다는 사실 확인 증빙으로 첨부
- 기관차량으로 출장시 운행일지 작성하고 산출된 주유비용만큼만 인정
- \* 네이버 지도 등에서 산출 표시된 금액 준용
- \*\* 통행료 및 주차료 지급기준 : 해당 영수증에 따라 실비로 지급

[예시] 1박2일 서울에서 광주 출장 시

<예산편성기준>

항목	기준	사용한도	비고
교통비	시내여비	실비	시내외 출장 기준 및 세부내용은 27페이지참조
	시외여비	실비	
	일비(1인 1일)	20,000원	
	식비(1인 1일)	25,000원	
숙박비(1인 1일)	실비(상한액 50,000원)		



<출장비용 계산>

지급처	교통비(왕복)	일비	식비	숙박비	합계
박직원	30,000	40,000	50,000	45,000	165,000

<지출결의서>

NO.         6        

<b>지 출 결 의 서</b>					
		담 당	팀 장	사무국장	회 장
		박직원	\	\	김대표
지 출 과 목	관	사업비		작성일 (지출일)	202x년 2월 7일
	항	사랑의열매 회계 관련 교육사업		지급일 (배분금 인출일)	202x년 2월 7일 (적요란 참조)
	목	100인 교육 프로그램			
지출 금액	금 일십육만오천 원정			비 고	
	₩ 165,000 원정				
<b>적 요</b>					
<p style="text-align: center;"><b>“100인 교육프로그램” 사업을 위한 출장비 지출</b></p> <p>출장비 신청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p> <p>출장처: 호남사회복지법인                      출장지역: 전라도 광주                      출장일시: 202x년 2월 2~3일                      출장자: 박직원                      계좌번호: 박직원 국민 123-12-11111</p> <p>첨부: 영수증(실비정산), 출장결과보고서</p>					

<표준현금출납부>

번호	증빙일자	증빙종류	증빙금액	거래처명	내역	결의서 번호	세목	계정명	유형	근거자료
2	2x.2.7	계좌이체 확인증	165천원	박직원	광주 출장	6	100인 교육프로 그램	출장비	송금	출장결과 보고서

**다. 강사비**

- 강사비 지출시에는 ‘강사비 및 기타 경비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해야하며, 강사비에 대한 원천징수([www.nts.go.kr](http://www.nts.go.kr) 참조) 후 지급 (강사비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기타소득은 법에 의해 세금을 내야함)

**[예시] 열매복지관 배분사업수행기관에서 1일 2시간씩 4일동안 회계교육 프로그램 진행시**

- 회계 전문자격증 소지자 김회계사 초빙.
- 김회계사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여 1급 강사로 1시간당 280,000원

구분	기준	사용한도
1급 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li> <li>• 인간문화재, 유명예술인 및 종교인</li> <li>• 정부출연 연구기관장</li> <li>•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li> <li>•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li> <li>•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4/5급 공무원</li> <li>• 사회복지 기관·시설장</li> <li>•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 시민단체, 기업교육 전문직 종사자</li> <li>• 기타 모금회가 인정하는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시간 최대 250,000원</li> <li>- 초과 매시간당 최대 150,000원</li> </ul>



**김회계사 강사비 비용 계산 예시 (기타소득 예시)**

예시1) 기본1시간 240,000원, 초과 매 시간당 120,000원  
 $(240,000\text{원} \times 1\text{시간}) + (120,000\text{원} \times 7\text{시간}) = 1,080,000\text{원}$   
 → 기타소득세 :  $1,080,000\text{원} \times 40\%(\text{필요경비 불인정}) \times 20\%(\text{세율}) = 86,400\text{원}$   
 → 기타소득주민세 :  $86,400\text{원}(\text{기타소득세}) \times 10\%(\text{세율}) = 8,640\text{원}$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x 8.8%  
 → 따라서 강사에게 지급할 금액은 86,400원과 8,640원을 제외한 984,960원으로 지급하고, 기타 소득세 및 기타소득주민세는 예수금 계정으로 기관에서 보관 후 익월 납부함  
 → 원천징수 금액 : 95,040원, 실지급액 : 984,960원  
 (원천징수 비율은 별도 확인하여 산정. 원천징수는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다운받아서 소득세 원천 징수액을 찾아 이용)



### 강사비 지급 증빙과 서류

- 지출결의서(강사비 산출내역 기재)
- 적격증빙 : 지급증, 계좌이체 확인증  
(※ ‘거래내역서’는 송금자, 수신자 내역을 수정할 수 있으므로 증빙자료로 불인정)
- 근거자료 : 강사이력서
- 사실확인 : 원천징수영수증(발행자보관용)



### <강사비산출표>

번호	강의일자	강사명	급	강의시간	강사비	강의장소	청강인수	0점사첨부	사진첨부
1	2X.2.4.	김회계	1급	14:00~16:00	360,000원	열매복지관 대회의실	73	0	0
2	2X.2.5.	김회계	1급	14:00~16:00	240,000원	열매복지관 대회의실	80	0	0
3	2X.2.6.	김회계	1급	14:00~16:00	240,000원	열매복지관 대회의실	75	0	0
4	2X.2.7.	김회계	1급	14:00~16:00	240,000원	열매복지관 대회의실	85	0	0
합 계	총 4일			총 8시간	1,080,000원				

### <지급증>

#### <강사비 지급증>

- 지급액: 240,000원
- 강의내용: 사회복지 회계교육
- 교육일시: 202X. 2. 7(금) 14:00~16:00

위 금액을 정히 수령합니다.  
202X. 2. 7.

- 수령인: 김 회계(인)
- 생년월일: 19xx년 0월 00일
- 주소: 서울시 중구 나눔로 2
- 연락처: 010-xxxx-xxxx
- 소속/직위: 나눔회계법인 회계사
- 입금계좌: XX은행 000-00-000000

**열매복지관**

※ 배분사업수행기관 내부직원이 김회계사 대신 강의를 하고 강사비(회의비, 심사비, 교재개발비 등)를 받아도 되나요?

☞ 기관의 직원은 강사비(회의비, 심사비, 교재개발비 등)를 지급받을 수 없음

<지출결의서>

NO. 7

<b>지 출 결 의 서</b>																	
		담 당	팀 장	사무국장	회 장												
		이담당	\	\	김대표												
지 출 과 목	관	사업비		작성일 (지출일)	202X년 2월 10일												
	항	사랑의열매 회계 관련 교육사업		지급일 (배분금 인출일)	202X년 2월 10일 (적요란 참조)												
	목	100인 교육 프로그램															
지출 금액	금 백만 원정			비 고													
	₩ 1,000,000원정																
적 요																	
<p><b>"100인 교육프로그램" 사업을 위한 강사비 지급과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auto;"> <thead> <tr> <th style="padding: 5px;">지급처</th> <th style="padding: 5px;">지급금액</th> <th style="padding: 5px;">지급방법</th> <th style="padding: 5px;">계좌번호</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김회계</td> <td style="padding: 5px;">984,960원</td> <td style="padding: 5px;">계좌이체</td> <td style="padding: 5px;">XX은행 000-00-000000</td> </tr> <tr> <td style="padding: 5px;">예수금통장</td> <td style="padding: 5px;">95,040원</td> <td style="padding: 5px;">계좌이체</td> <td style="padding: 5px;">OO은행 123-45-678910</td> </tr> </tbody> </table>						지급처	지급금액	지급방법	계좌번호	김회계	984,960원	계좌이체	XX은행 000-00-000000	예수금통장	95,040원	계좌이체	OO은행 123-45-678910
지급처	지급금액	지급방법	계좌번호														
김회계	984,960원	계좌이체	XX은행 000-00-000000														
예수금통장	95,040원	계좌이체	OO은행 123-45-678910														
첨부: 계좌이체 확인증, 지급증, 강사이력서, 통장사본, 강사비 산출표, 원천징수영수증																	

<표준현금출납부>

번호	증빙일자	증빙종류	증빙금액	거래처명	내역	결의서 번호	세목	계정명	유형	근거 자료
1	2X.2.10	계좌이체 확인증	984,960	김회계	강사비지급	7	100인 교육 프로그램	강사비	송금	강사비 산출표 등
2	2X.2.10	계좌이체 확인증	95,040		강사비예수 금지급	7	100인 교육 프로그램	강사비예수 금	송금	원천징수 영수증



## 라. 단순인건비

- 단순인건비 지출시 '강사비 및 기타 경비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 단순 인건비에 대해 원천징수 후 지급 (\* 근무일지 첨부 필수)



### <단순인건비 지급증 예시>

#### < 지급 증 >

- 지급액 : 76,220원
- 근무내용 : 사회복지 회계교육 진행요원
- 교육일시 : 202X.2.14(금) 09:00~18:00

위 금액을 정히 수령합니다.

202X년 2월 14일

- 수령인 : 김열매
- 생년월일 : 19XX. 6. 14.
- 연락처 : 010-XXXX-XXXX
- 소속/직위 : 대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입금계좌 : OO은행/987-65-43210/김열매

열 매 복 지 관

마. 현수막

- 실제 부착사진이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 제출

<표준현금출납부>

번호	증빙일자	증빙종류	증빙금액	거래처명	내역	결의서 번호	세목	계정명	유형	근거 자료
1	2x.6.2	배분사업 전용결제카드	50,000	00현수막	교육 현수막 제작	21	100인~ 사업비	인쇄비	인출	-

바. 원고료

- 강사비 및 기타 경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지급
- 예산편성기준

항목	기준	사용한도
원고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4용지 1매 기준</li> <li>-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300단어</li> <li>-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슬라이드 3면을 A4 1면으로 산정</li> <li>- 원고지로 작성한 경우에는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1면으로 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000원</li> <li>* 시간당 6매 까지만 인정 최대 30만원 까지 지원</li> </ul>

<표준현금출납부>

번호	증빙일자	증빙 종류	증빙금액	거래처명	내역	결의서 번호	세목	계정명	유형	근거 자료
1	2x.6.2	지급증	100,000	김회계	강의관련 원고료 지급	31	100인~ 사업비	원고료	송금	원고료 산출표

**사. 자료집**

- 자료집 등 인쇄출판물은 사진을 찍어 제출
- 구매 및 입찰기준에 따라 지출처리

(※ 비교견적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지출결의서에 비교견적을 할 수 없는 사유를 반드시 기재)

**<비교견적 결과서>**

<b>&lt;비교견적 결과서&gt;</b>		
1. 비교견적 건명 : 1,000인 교육 프로그램 교육자료 인쇄의 건		
2. 비교견적예산 : 4,500,000원		
3. 비교견적 수행 담당자 : 김직원		
4. 비교견적 대상 : 총 2업체 비교견적(입찰)		
번호	제안회사(인) 명	제안금액
1	A인쇄소	5,000,000원
2	B인쇄소	4,500,000원
5. 비교견적 결과일자 : 20xx년 5월 15일		
6. 비교견적 결과 : 경수인쇄소(번호2번)		
7. 비교견적 결과에 대한 근거		
본 견적은 교육자료 인쇄의 건으로 1번과 2번이 제공하는 인쇄의 품질에 중요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더 낮은 가격을 제안한 2번 업체로 선정함(이하여백)		
<b>열매복지관</b>		

**<표준현금출납부>**

번호	증빙일자	증빙종류	증빙금액	거래처명	내역	결의서 번호	세목	계정명	유형	근거 자료
1	2x.5.30	세금 계산서	4,500,000	경수 인쇄소	자료집 인쇄	30	1,000인 ~ 사업비	인쇄 출판	송금	비교 견적 결과서

**아. 다과비**

- 강사비 및 기타 경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지급
- 다과비 산출표를 반드시 작성하여 지출결의서에 첨부

<다과비 산출표>

참석자수	총 다과비	평균 다과비(1인 기준)
2명	10,000원	5,000원

**자. 회의참석비와 회의비**

- 강사비 및 기타 경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지급
- 내부직원에게 지급 불가

[예시] 1인이 회의 3회 실시, 1회당 100,000원씩 회의비 지급시

- 한번에 300,000원(100,000원 X 3회)을 송금 시 → 반드시 원천징수
- 하루에 한번씩 100,000원 지급 시 → 원천징수 안함  
(단, 기타소득의 경우 月 지급 총액이 125,000원 초과인 경우 원천징수)

<1인당 10만원의 회의비 지급시 지급증>

**< 회의참석비 지급증 >**

○지급액 : 100,000원

○회의내용 : 참여자 연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의

○회의일시 : 202X. 3. 5(화) 14:00~16:00

위 금액을 정히 수령합니다.

202X년 3월 5일

○ 수령인 : 김나라 (인)

○ 생년월일 : 19XX. 05. 30

○ 주소 : 00도 00군 00구 00아파트 14XX-3XX

○ 연락처 : 010-XXXX-XXXX

○ 소속/직위 : 나눔지역아동센터/센터장

○ 입금계좌 : 우리/333-45-678902/김나라

**열 매 복 지 관**

<회의참석비 산출표>

번호	참석자명	소속	참석시간	회의장소	지급금액
1	김OO	XX지역아동센터	14:00 ~ 16:00	비즈센터 제2회의실	100,000원
2	이OO	OO협회	14:00 ~ 16:00	비즈센터 제2회의실	100,000원
3	박OO	△△병원 사회사업실	14:00 ~ 16:00	비즈센터 제2회의실	100,000원
4	최OO	□□보호전문기관	14:00 ~ 16:00	비즈센터 제2회의실	100,000원
합계					400,000원

<표준현금출납부>

번호	증빙일자	증빙종류	증빙금액	거래처명	내역	결의서번호	세목	계정명	유형	근거자료
1	2X.3.5	계좌이체 확인증	100,000	김OO	회의 참석	12	발굴 네트워크 구축	회의 참석비	송금	회의참석비 산출근거
2	2X.3.5	계좌이체 확인증	100,000	이OO	회의 참석	12	발굴 네트워크 구축	회의 참석비	송금	회의참석비 산출근거
3	2X.3.5	계좌이체 확인증	100,000	박OO	회의 참석	12	발굴 네트워크 구축	회의 참석비	송금	회의참석비 산출근거
4	2X.3.5	계좌이체 확인증	100,000	최OO	회의 참석	12	발굴 네트워크 구축	회의 참석비	송금	회의참석비 산출근거
5	2X.3.5	카드 전표	30,000	비즈센터	회의 관련 장소 대여	12	발굴 네트워크 구축	회의비	인출	견적서

차. 입찰 실시

※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실행

- ‘1천만원 초과’의 물품구매’와 ‘2천만원 초과’의 물품제조, 용역, 공사’ 발주 시 전자입찰 실시
- \* 단, 연구용역사업의 경우 5천만원 초과 시 전자입찰 실시
- 입찰은 최저가를 선택하기 위한 의미가 아니라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통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데 의미가 있음
- 입찰 사실 확인 서류
  - 입찰공고문, 입찰업체의 제안서, 입찰업체평가서, 개찰조서(나라장터에서 출력)
- 비영리단체나 사업체에 용역을 줄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받아 증빙첨부

**카. 자문비**

- 강사비 및 기타경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지급(p.28, 슈퍼비전 기록지 첨부)
- 내부직원에게 지급 불가
- 시외의 경우 교통비 실비지급 가능
- 1일 최고 20만원까지 지급
- 슈퍼비전 기록지 첨부 필수

[예시] 김교수 자문시간 2시간인 경우

<자문비 산출표>

자문인명	자문시간	지급금액	내부직원 여부
한국대학교 김공신	2시간	100,000원	내부직원 아님

<자문비 지급증>

**< 자문비 지급증 >**

○지급액 : 100,000원  
 ○회의내용 : 고립가구 특성 및 접근 방안에 대한 자문  
 ○회의일시 : 202X. 2. 17(화) 14:00~16:00

위 금액을 정히 수령합니다.

202X년 2월 17일

○ 수령인 : 김공신 (인)  
 ○ 생년월일 : 19XX. 05. 30  
 ○ 주소 : 00도 00군 00구 00아파트 14XX-3XX  
 ○ 연락처 : 010-XXXX-XXXX  
 ○ 소속/직위 : 한국대학교 교수  
 ○ 입금계좌 : 우리/333-45-678902/김공신

**열 매 복 지 관**

<표준현금출납부>

번호	증빙일자	증빙종류	증빙금액	거래처명	내역	결의서번호	세목	계정명	유형	근거자료
1	2X.2.17	계좌이체 확인증	100,000	김공신	고립가구 관련 자문비	10	발굴 네트워크 구축	자문비	송금	슈퍼비전 기록지 자문비 산출표

**타. 번역료**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센터 요율표’를 기준으로 지급(시행시점 가장 최근 자료 이용)
- <http://www.hufscit.com/> 참조

**파. 워크숍비**

- 1인기준 사용한도 70,000원(1박2일 기준 숙박비, 식비)
- \* 진행비(교통비, 대관료 등)는 실비 적용하여 별도 편성하고, 사용한도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는 모금회의 사전 승인 필요

**[예시] 20명 참여 워크숍 진행시**

**<워크숍비산출표>**

워크숍명	참석자수	장소	지급금액
네트워크 기관 성과보고회	20명	인천 OO인재개발원	1,000,000원



여행사를 통한 견적의뢰 진행

**< 비교견적(입찰)결과서 >**

1. 비교견적(입찰)건명: 성과보고회 워크숍 개최
2. 비교견적(입찰)예산: 1,000,000원
3. 비교견적(입찰)수행 담당자: 이담당
4. 비교견적(입찰)대상: 총 3업체 비교견적(입찰)

번호	제안회사(인)명	제안금액(원)
1	xx연수원	1,200,000
2	OO인재개발원	1,000,000
3	△△프라자	1,100,000

5. 비교견적(입찰)결과일자: 202X년 3월 20일
6. 비교견적(입찰)결과: 사랑여행사(번호3번)
7. 비교견적(입찰)결과에 대한 근거

본 건은 30만 원 이상의 일괄용역계약이므로, 비교견적을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 상 차이가 없어 가장 저가의 견적을 제시한 OO인재개발원으로 선정함(이하여백)

**열매복지관**

**<표준현금출납부>**

번호	증빙일자	증빙종류	증빙금액	거래처명	내역	결의서번호	세목	계정명	유형	근거자료
1	2X.3.25	세금계산서	1,000,000	OO인재개발원	성과보고 워크숍 개최	14	성과보고 프로그램	워크숍비	송금	비교견적(입찰)결과서







2021년 배분사업 수행안내

---

## 5. 사업 및 예산변경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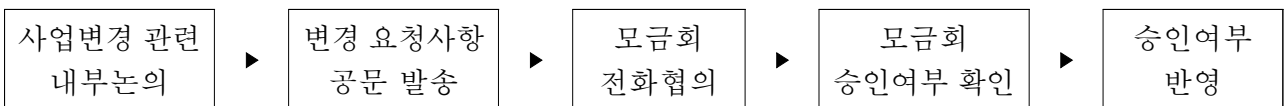
# 5. 사업 및 예산변경 요청

## 1. 사업 및 예산변경 원칙

□ 모든 사업 및 예산계획 변경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가변동, 참여자 수의 증감 등의 사유로 기존 사업계획서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고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세부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단, **예산항목의 재설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예외적으로 당초 계획서의 항목설정이 미비하여 집행에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항목을 재설정할 수 있음
- **잔여사업비를 사용하기 위한 예산전용 지양**
- 사업 및 예산변경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변경 세부내역을 모금회와 협의 후 공문 요청하고 최종 승인결과 통보사항 확인 후 사업 및 예산을 변경함
- **사업 및 예산변경 가능기한 : 사업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가능**
  - 모금회 변경요청 및 내부변경 건을 모두 포함한 변경 가능기한임
  - 모금회에 변경요청 후 승인까지의 시간적 소요가 크므로 사업 진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2~3주의 여유 기간을 가지고 신청 완료해야 함

## 2. 사업 및 예산변경 요청절차



- 반드시 모금회의 변경요청 승인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함
- 예산의 변동 없이 사업 실시시기 등 프로그램 내용만 일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상.하반기 사업평가서 작성 시 변경내용을 별도로 기재합니다.  
단, 사업변경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시 원상복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3. 사업변경 불가 사항

- 사업변경으로 인해 당초 사업목적(목표) 및 기획의도 등이 변경되는 경우
- 인건비 또는 재산조성비(기자재 등) 관련 항목을 신설 또는 증액하는 경우
- 세부 프로그램의 삭제 및 신설이 지나친 경우

## 4. 예산변경 안내

### 가. 예산변경 기준

- 예산항목 중 인건비 목의 경우 예산조정이 불가함
  - ☞ 단, 채용시기의 지연 또는 담당인력의 변경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은 사업에 한해, 잔액을 모금회의 승인 후 전용은 가능함.
- 변경 요청기한 이후, 모든(모금회 승인, 내부승인) 예산전용이 불가함

<배분금별 예산변경 기준>

구분	내용	
배분금(1개소)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
예산변경 범위	100만 원 이하(누적금액)	20% 이하(누적비율)
예산변경 항목	세목 간, 세세목 간	세목 간, 세세목 간
비고	단, 예산변경 누적금액이 총 배분금의 50% 초과 시는 모금회 승인 필요	단, 예산변경 누적금액이 1천만원 초과시는 모금회 승인 필요

※ 최종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세세목이 없는 경우, 세목 간만을 예산 변경 항목으로 봄

※ 위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목간 전용’ 및 ‘신규 세목과 세세목 추가’ 시에는 모금회 승인필요

<배분금별 세목 간·세세목 간 예산변경 기준표>

“500만원 이하 배분사업”

“500만원 초과 배분사업”

배분금액 (만원)	변경한도 (만원)	총 배분금액 대비 자체승인 가능 변경 비율	배분금액 (만원)	변경한도 (만원)	총 배분금액 대비 자체승인 가능 변경 비율
500	100	20%	100,000	1,000	1%
400	100	25%	50,000	1,000	2%
300	100	33.30%	10,000	1,000	10%
200	100	50%	5,000	1,000	20%
100	50	50%	2,000	400	20%
50	25	50%	1,000	200	20%

\*\* 예시 \*\*

- 배분금액이 3천만 원인 경우, 자체승인은 변경 누적금액 6백만 원 이하 범위에서 가능
- 배분금액이 7천만 원인 경우, 자체승인은 변경 누적금액 1천만 원 이하 범위에서 가능

나. 예산변경 시 유의사항

- 사업 및 예산변경 가능기한 : 사업종료 2개월 이전,
  - 변경요청 후 동의까지의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기한 2주일 이전까지 본 요청서를 제출 완료함
- 변경요청서는 ‘공문’과 변경내용이 반영된 ‘수정사업계획서’를 함께 첨부하여 모금회담당자 이메일 또는 팩스 발송
- 본 변경요청서는 모금회의 최종 동의를 받은 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 예산변경 가능항목 안내

관			사업비		
항			공동모금회 "OOO사업" 사업비		
목	세목	세세목	계	산출근거	예산금액
인건비	전담인력	급여	14,500,000	1,000,000원+12월=12,000,000원	← 인건비 '목'은 예산조정이 불가함.
		4대 보험		125,000원+12월=1,500,000원	
		퇴직적립금		1,000,000원	
		소계		14,500,000	
사업비	심리정서 지원	사례관리위원회	2,100,000	사례회의비 100,000+3명+5회	1,500,000
		자기회복 프로그램		강사비(3급강사, 1시간) 150,000원+2명+2회	600,000
		계		2,100,000	
	직업역량 강화	진로상담	10,000,000	전문 진로상담 50,000+20명+2회	2,000,000
		기초교육		분야별 아카데미 100,000원+20명+4회	8,000,000
		계		10,000,000	
	소계		12,100,000	계	12,100,000
관리운영비	사무용품	-	360,000	문구류 및 사업관련 소모품 30,000원+12월	360,000
		계		360,000	
소계		360,000		360,000	
총계					26,960,000

세목간 전용

목간 전용

세세목 간 전용

- 목간전용 : 관-항-목 중 목에 해당하는 사업비, 관리운영비를 전용하는 경우  
(예: 관리운영비 내의 사무용품구입 예산 중 일부를 사업비 내의 교육비로 투입하는 경우)
- 세목 간 전용 : 관-항-목 중 동일한 목 안에 있는 세목끼리 전용하는 경우  
(예: 사업비 내에 있는 참가자 모집 홍보비 중 일부를 교육비로 투입하는 경우)

## 5. 기타 변경사항 통보

### 가. 기관정보 관련 변경사항

- 사업수행기관의 전화번호, 주소, 운영법인 등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1주일 내에 모금회에 변경내역을 통보해야 함(변경 전/후 내역 기재)

### 나. 사업 주담당자 변경사항\*\*

- 담당자 변경 시, 사전에 모금회 담당자와 협의 후 신규 담당자 선임 1주일 내에 반드시 변경내역을 통보해야 함(변경 전/후 내역 기재)
- 짚은 담당자 변경은 사업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되므로 유의 바람

### 다. 네트워크 및 기관 간 컨소시엄에 관한 변경사항

- 기관 간 컨소시엄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컨소시엄에 변동사항 발생 시(기관 중도 탈락 등) 모금회에 즉시 통보해야함

<사업 및 예산변경요청 문서작성 예시>

## 사랑의열매종합사회복지관

수 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배분팀장)

제 목 : 202x년 신청사업 “○○사업”(세부사업명) 사업계획 및 예산변경 검토 요청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x년 신청사업 “○○사업”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내용 및 사유

○ 오리엔테이션 횟수 축소 및 예산 감액

당초 10회 진행예정이었으나 현재 참여자수 및 교육 이수율이 높아 7회로 축소 운영 하고 관련 예산을 감액 하고자 함.

○ 전문교육 예산 증액

참여인원 초과에 따른 전문교육 대상인원 증가로 관련 예산을 증액 하고자 함.

나. 세부내역

(단위: 원)

구분 목	세목	변경 전		변경 후		증감 내역	비고
		금액	산출근거	금액	산출근거		
사업비	오리엔테이션	1,500,000	교육진행비 150,000×10회 =1,500,000	1,050,000	교육진행비 150,000×7회 =1,050,000원	-450,000	
	전문교육	3,000,000	전문교육강사비 200,000×10회 =2,000,000 진행비 100,000×10회 =1,000,000	3,450,000	전문교육강사비 200,000×10회 =2,000,000 진행비 145,000×10회 =1,450,000	+450,000	
계		4,500,000	-	4,500,000	-		

다. 총 배분금액 대비 예산변경 누적비율 : 24.5%

총 배분금액(A)	예산변경 신청금액	예산변경 누적금액(B)	예산변경 누적비율(B/A)
10,000,000원	450,000원	2,450,000원	24.5%

첨 부 ○○ 수정사업계획서 1부. 끝.

## 사랑의열매종합사회복지관장[직인]

담당	문서작성자	과장	성명	부장	성명	기관장	성명
협조자							
시행	문서번호 (시행일자 연. 월. 일 기재)			접수		( . . )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담당자전화	전송		담당자이메일				

<담당자 변경 문서작성 예시>

## 사랑의열매종합사회복지관

수신인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사업담당자)

제 목 : 202x년 신청사업 “○○사업”(세부사업명) 담당자 변경 통보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x년 신청사업 “○○사업”의 담당자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기간 : 202x년 1월 1일 ~ 12월 31일

나. 담당자 변경사항

- 기존 담당자 : 김열매 대리
- 변경 담당자 : 김사랑 대리

T : 02-323-0000, F : 0303-3261-2105, E-mail : [chest@chest.or.kr](mailto:chest@chest.or.kr)

H·P : 010-000-0000

다. 변경사유 : 내부 업무조정으로 인한 담당자 변경. 끝.

## 사랑의열매종합사회복지관장[직인]

---

담당	문서작성자	과장	성명	부장	성명	기관장	성명
협조자							
시행	문서번호 (시행일자 연. 월. 일 기재)			접수	( . . )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담당자전화		전송		담당자이메일			





2021년 배분사업 수행안내

---

## 6. 배분금 잔액 반납 및 환수절차



## 6. 배분금 잔액 반납 및 환수절차

### 1. 배분금 반납 대상

- 배분사업 종료 후 지원금(이자발생분 포함)의 잔액
  - 배분사업 종료일까지 발생한 지원금 잔액(이자발생분 포함) 반납을 원칙으로 함
    - ※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배분금에 포함하여 사용하고 사업종료 후 미사용 잔액은 반납
- 다년도 사업의 경우 각 사업연도 사업종료 후 잔액
- 인건비의 경우 인력채용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한 비사용 잔액 및 담당자가 1년 이전에 퇴직 경우 해당 퇴직적립금
- 모금회가 특정 사유로 기관에 지원금 반납 요청한 경우 해당 금액

### 2. 반납 예외의 경우

- 사업종료일 현재 잔액이 0원이거나, 잔액을 전액 반납한 후에 사업비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추가로 반납하지 않고 기관의 잡수입으로 처리함
- 잔액 총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기관의 잡수입으로 처리함

### 3. 반납 및 환수 절차

- 반납계좌
  - 농협은행 : 301-0106-6930-21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전남
- 반납 관련 사업명, 반납금액, 반납일시, 반납계좌를 명시한 공문서 제출
- 유의사항 : **반납 시 반드시 기관명으로 입금**
- 사업·예산 평가결과 모금회 환수요청이 있을 시 공문수령 후 1개월 이내에 반납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 환수 및 지원중단의 경우 배분사업으로 구입한 비품(장비 등)은 사안별로 모금회가 반납여부를 결정함

<보고서 제출 및 잔액반납 공문 작성 예시>

## 사랑의열매종합사회복지관

수신인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참조 : 배분사업본부장)

제 목 : 202x 신청사업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잔액 반납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업”의 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 잔여 사업비를 반납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가. 결과보고서 : 붙임 참조

나. 잔여 사업비 반납

- 1) 반납금액 : 625,200원(송금수수료 500원 제외 후 반납)  
- 사업비 잔액 : 620,000원 / 이자수입 : 5,200원
- 2) 주요반납사유 : 담당자 채용 지연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 및 ‘○○○프로그램’ 1회 미시행으로 인한 잔액 반납
- 3) 반납계좌 : 농협, 301-0106-6930-21  
(예금주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전남)
- 4) 입금자명 : 사랑의열매종합사회복지관
- 5) 반납일 : 202x 12. 28(월)

붙 임: “○○사업” 결과보고서 1부. 끝.

## 사랑의열매종합사회복지관장[직인]

담당	문서작성자	과장	성명	부장	성명	기관장	성명
협조자	시행			접수	( . . )		
우편번호	문서번호 (시행일자 연. 월. 일 기재)		주소	홈페이지			
담당자전화	전송		담당자이메일				



2021년 배분사업 수행안내

---

## 7. 사업평가 및 기타사항



# 7. 사업평가 및 기타사항

## 1. 중간 및 최종 현장평가

### 가. 사업 . 회계평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배분사업에 대한 최종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사업평가와 회계평가를 진행합니다. 사업평가는 모금회 평가지원단에서 진행하며, 회계평가는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가 평가를 진행합니다. (사업비 지원 시 모금회에서 기관에 발송하는 “사업비 지원 및 결과보고 안내” 공문상 내용을 반드시 참고 요망)

#### (1) 배분지원사업 평가 개요

	① 사업평가	② 회계평가
목적	사업수행 과정 및 성과에 대한 평가	배분금의 적정한 집행여부 평가
평가기준	배분의 적절성, 사업목표 달성도, 문제 해결 기여도, 배분의 성과 등	모금회 지침 및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발표한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 기준에 따라 합의된 절차 수행 여부
방법	서류, 현장 평가(필요시)	서류 평가
평가자	배분분과실행위원, 평가지원단원, 외부 전문가 등	모금회가 지정한 회계법인
제출처	모금회 사무처	모금회가 지정한 회계법인 or 모금회 * 제출시 모금회 사무처와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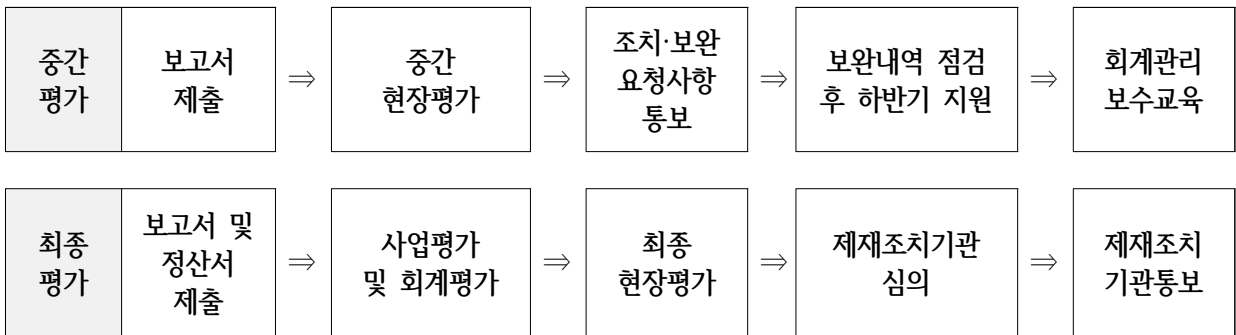
#### 1) 평가목적

- 사업계획 대비 목표달성 여부의 확인을 통한 사업효과성 제고
- 배분사업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으로 현장의 의견 청취·반영
- 배분사업 수행기관의 전문성 향상 및 적절한 관리체계의 도입 유도

## 2) 평가 내용

평가항목 구분	점검 내용
사업수행도	□ 계획대비 사업수행 정도
적 절 성	□ 사업목적과 수행내용의 일치여부 □ 대상자 선정의 적절성 □ 투입인력 및 자원동원 내역의 적절성
준 수 성	□ 모금회 회계지침 준수여부 □ 사업/예산변경시 절차 준수 여부 등
사업 관리	□ 사업관련 과정기록지 비치여부 및 작성내용의 충실도
예산집행 현황	□ 중간보고서 및 현장방문 시의 예산집행 현황 □ 항목별 집행내용의 적절성 및 증빙 자료의 구비여부

## 3) 사업평가 절차



## 4) 평가결과 반영

- 평가결과가 우수할 경우 차년도 지원, 향후 사업수행 시 이를 반영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사업 종료 및 지원금 회수,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배분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비용임이 발견된 경우
- 배분금을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 배분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모금회법 제23조에 따른 모금회의 서류제출 요구 또는 지원사업과 관련된 조사에 불응한 경우
- 모금회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현장방문 결과 혹은 사업평가 결과가 미흡하거나,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사업수행 안내지침, 계약사항 위반 등의 위배사항이 발견될 경우 등



## 2. 사업평가 시행 절차 안내

### (1) 사업평가 제출 자료

- ① 결과보고서(양식), 정산보고서(양식), 사업계획서 최종본(양식)
- ② 잔액 반납 공문 및 통장사본 마지막 장('0'원이 확인된 사본)
- ③ 온라인사업지원시스템에 관련 서류 제출(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표준현금출납부 등)
- ④ 사업과정 및 결과 증빙자료 일체

▷ 모든 증빙자료를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에 근거하여 준비함

사업과정	결과 증빙서류 예시
대상자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선정관련 서류 : 선정요청(공문 등), 선정관련자료(심사, 회의 등), 선정자 서류(신청서, 경제상황확인서류,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li> <li>• 참여인원 실적에 따른 참여리스트 등</li> </ul>
세부 사업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회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서상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맞춰 사업 관련 자료를 전체 구비</li> <li>•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회의 시 - 진행 기록 및 위원회 명단 (회의비 지급 시 이력서, 통장사본 구비, 개인정보활용동의서)</li> <li>• 물품구입 및 공사 계약 시 - 입찰자료, 구입관련 서류 등 진행과정전체에 대한 서류</li> <li>• 대상자의 사례관리 또는 교육 등 개인 변화에 대한 사업지원 시 - 사전사후(변화정도)를 알 수 있는 기록지, 사례상담기록 등 대상자별 관련서류</li> <li>• 계획 내 단위사업별 사업 진행 관련(예: 행사, 교육 등) -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진행과정에 대한 내용 일체 - 행사 사진</li> <li>• 홍보 관련 - 홍보물 배포 리스트, 보도자료, 홍보물 샘플 등 관련 서류 일체</li> <li>• 의뢰 및 네트워크 : 의뢰서 및 네트워크 기관 명단 및 회의록</li> <li>• 가정방문 : 가정방문기록서</li> </ul>
목표에 따른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서상 작성된 목표에 따른 평가방법에 대한 내용 자료 구비</li> <li>• 사전사후 척도 결과 및 분석내용</li> <li>• 만족도 결과 분석내용</li> <li>• 심사위원 평가 결과</li> <li>• 관찰 기록지</li> <li>• 사업보고서 등</li> </ul>

\* 반복되는 자료는 일부 샘플 제출 가능(1일 관찰 기록지, 주간 보육일지 등)

(2) 평가자료 제출처

- 주소 : (58567)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전문건설회관 5층)

(3) 제출시 유의사항

- 제출시 봉투 표지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평가용'임을 명시
- 정산서 표지에 모금회 사업명(예 : '202x년 신청사업-장애인 이동편의증진 기능보강사업), 기관명, 기관담당자, 연락처(전화 및 이메일) 명시 요망
  - ※ 관련 양식 : 하단'발송표'참조

※ 발송표

: 아래의 양식을 작성 후 출력하시어 정산자료 제출시 서류봉투/박스 겉면에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u>사업평가용</u> 증빙서류	
사 업 명	(        )년 신청사업-‘사업명’
기 관 명	
기관담당자명	
모금회담당자명	
연락처/e-mail	
제출자료  *【    】안에 √ 표시	【    】①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    】② 잔액반납공문 및 통장사본 (예산변경 공문/내부기안 포함) 【    】③ 최종사업계획서 【    】④ 사업관련 증빙자료 【    】⑤ (담당자 e-mail 발송)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file 【    】⑥ (담당자 e-mail 발송) 표준현금출납부 file

### 3. 회계평가 시행 절차 안내

#### (1) 회계평가 자료 제출 준비

제출 방법	제출 자료(회계법인 제출 시)
이메일	○ 표준현금출납부 엑셀파일
우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산보고서</li> <li>○ 최종 조정사업계획서(예산변경 공문/내부기안 포함)</li> <li>○ 통장 사본(지출내역 전체 포함)</li> <li>○ 회계장부 사본(표준현금출납부 인쇄본, 총계정원장)</li> <li>○ 날짜순서로 정리된 증빙이 첨부된 결의서 원본</li> <li>○ 전담 직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급여대장</li> <li>○ 기타 관련 증빙서류철 원본(검토 후 수행기관에 재 송부함)</li> <li>○ 각 단위 지출의 증빙은 지출결의서에 내부기안(지출품의),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체크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등) 순서대로 첨부하여 한 묶음으로 구성</li> <li>○ 각 지출 증빙서류는 통장/현금출납부와 상호대사가 가능하도록 통장/현금출납부 순서대로 편철</li> <li>○ 지출 증빙서류가 많을 경우 월 단위로 간지를 삽입하여 구분하며, 증빙서류철이 너무 두꺼울 경우 두 권 이상으로 분리하여 철하되 연번을 표시토록 함 (예시: 모두 3권일 경우, '증빙서류 3-1, 증빙서류 3-1, 증빙서류 3-3'으로 표시)</li> </ul>

※ 증빙서류 구비 시 주의사항 ※

- 사업 평가와 관련된 서류와 회계정산 서류는 분리하여 편철하여야 함
- 자부담금 관련 서류는 배분금 관련 서류와 구분하고 정산보고서 제출 시 배분금 서류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부득이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 증빙에 자부담금을 구분 표시하도록 함
- 자부담금 관련 서류는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아니하나,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제출을 요청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검토할 수 있음
- 배분금을 1차로 지원받은 기관이 다시 2차 또는 3차 기관에게 배분금을 지원하는 경우 자료 제출 시 해당 기관의 지출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함

(2)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시 봉투 표지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계평가용' 임을 명시
- 정산서 표지에 모금회 사업명(예: 202x년 ○○○신청사업-장애인 이동편의증진 사업), 기관명, 기관담당자, 연락처(전화 및 이메일) 명시 요망

※ 회계평가를 위해 회계법인으로 회계자료 제출 시, 발송표

: 아래의 양식을 작성 후 출력하시어 정산자료 제출시 서류봉투/박스 겉면에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회명) <u>회계평가용</u> 정산서류	
사 업 명	202x년 신청사업-‘사업명’
기 관 명	
기관담당자명	
모금회담당자명	
연락처/e-mail	
제출자료  *【 】안에 √ 표시	<input type="checkbox"/> ① 정산보고서 <input type="checkbox"/> ② 최종 조정사업계획서 (예산변경 공문/내부기안 포함) <input type="checkbox"/> ③ 통장 사본 <input type="checkbox"/> ④ 회계장부 사본(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 전산파일(Excel 형식) e-mail 제출 <input type="checkbox"/> ⑤ 관련 증빙서류철 원본 (지출결의, 기안사본, 영수증, 견적서, 사진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사업.회계 평가자료 제출 시, 발송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u>사업.회계평가용</u> 증빙서류	
사 업 명	(        )년 신청사업-‘사업명’
기 관 명	
기관담당자명	
모금회담당자명	
연락처/e-mail	
제출자료  *【    】안에 ▽ 표시	【    】①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    】② 잔액반납공문 및 통장사본 (예산변경 공문/내부기안 포함) 【    】③ 최종조정사업계획서 (예산변경 공문/내부기안 포함) 【    】④ 사업관련 증빙자료 【    】⑤ 통장 사본 【    】⑥ 회계장부 사본(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    】⑦ 관련 증빙서류철 원본 (지출결의, 기안사본, 영수증, 견적서, 사진 등) 【    】⑧ (담당자 e-mail 발송)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file 표준현금출납부 file

#### 4.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별 제재조치 기준 안내

사업평가	회계평가	조치기준	
		조치내용	향후 배분대상 제외기간 (년)
A	A, B	-	-
	C	주의	-
	D	경고	1
	F		2
B	A, B	-	-
	C	주의	-
	D	경고	1
	F		2
C	A, B	주의	-
	C	경고	1
	D		1
	F		2
D	A, B, C	경고	1
	D		2
	F		3
F	A, B, C	경고	2
	D		3
	F		5

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F등급
점수	90점 이상	80~89	70~79	60~69	59점 이하

- ※ 배분금을 받은 자가 주의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주의조치를 받을 때에는 제재조치의 수위를 가중하여 경고조치 할 수 있음.
- ※ 3년 이상 계속되는 배분사업의 경우, 주의조치가 2회 연속되는 때에는 배분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음.

#### 5. 기타사항

##### 가. 기관정보 관련 변경사항

사업수행기관의 전화번호, 주소, 운영법인 등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2주일 내에 공동 모금회에 변경내역을 공지하여야 함 (변경 전/후 내역 기재)

##### 나. 사업담당자 변경사항

담당자 변경 시, 사전에 모금회 담당자와 협의 후 신규 담당자 선임 1주일 내에 변경내역을 공지하여야 함 (변경 전/후 내역 기재, 신임 담당자 이력서 첨부)



2021년 배분사업 수행안내

---

## 8. 구매 및 입찰





## 8. 구매 및 입찰

### 1. 관련법령

- 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보건복지부령]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유 형	주요 내용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정보·소방·기타공사	용역	물품
나라장터 일반입찰	• 추정가격 1) 2억원 초과	• 추정가격 1억원 초과	•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나라장터 소액입찰	• 추정가격 2억원 이하 2천만원 초과	• 추정가격 1억원 이하 2천만원 초과	•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1인견적 <sup>2)</sup> 제출가능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확인이 필요한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안전과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국내외 연수,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 용역의 경우 나라장터 소액입찰을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의 견적비교를 통해 일반 수의계약 가능함 (단,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의 계약만 적용됨)</li> <li>• 법률에 의한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과 계약하는 경우 나라장터 소액입찰을 이용하지 않고 1인 견적을 통해 수의계약 가능함(단,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의 계약만 적용되고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은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을 충족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li> <li>• 법률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생산하는 물품제조/구매,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나라장터 소액입찰 및 일반입찰을 이용하지 않고 1인 견적을 통해 수의계약 가능함(단, 추정가격 5천만 원 초과도 가능)</li> <li>•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등록된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나라장터 소액입찰 및 일반입찰 이용 없이 즉시 구매가 가능함(2인 이상 견적비교도 제외됨)</li> </ul>				

1) 추정가격 = 추정금액 - 부가가치세

2) 1인 견적 = 본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제출(거래실례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경제적인 가격으로 결정한 증빙자료(인터넷 가격비교, 비교견적서 등 포함)

※ 수의계약 체결 시 100만원 미만의 건은 견적서(비교견적 포함) 제출 생략 가능

※ 참고 : 1인 견적 비교검토 방법

-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또는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과의 계약 시
  - 거래실례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경제적인 가격으로 결정한 증빙자료 별도 제출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과의 계약 시,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을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별도 제출.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만 가능함.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의 계약시(단, 기타 법률에 의한 1인 견적 제출가능 수의계약 포함)
  -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예정가격 이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결정한 증빙자료 별도 제출

## 2. 입찰공고

### 가. 재공고와 정정공고

-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입찰공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해야 함
- 입찰공고 내용에 단순 법규위반 사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관련법령 등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 해야 함. 다만, 정정공고는 해당 입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하여 공고해야 함

### 나. 물품 및 용역의 규격 사전공개

- 5일간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간) 나라장터에 공개
  - 물품의 경우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공개
  - 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공개
- 업체의 의견이 있을 시 그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

- 사전공개 생략 대상
  - 공사
  - 긴급한 수요로 구매하는 물품 또는 용역
  -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
  - 음식물(재료 또는 가공품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농·축·수산물

#### 다. 공고기간(물품 및 용역의 규격 사전공개 후 시행)

- 소액입찰 : 3~5일
- 일반입찰 : 7일(단, 긴급 및 재공고는 5일 가능)
- 규격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공사는 규격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불가)
  -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 10일
  -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20일 (단, 긴급 및 재공고는 10일 가능)
  -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 40일 (단, 긴급 및 재공고는 10일 가능)

### 3. 계약보증금

- 공사 :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 물품, 용역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 ※ 계약보증금은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납부(현금 또는 보증서)하는 것임

### 4. 선금지급

- 가. 지급대상 : 공사, 물품 제조(단, 물품 구매는 제외), 용역계약
- 나. 지급범위 : 공사, 물품 제조 계약금액의 50% (단, 용역계약은 70%까지 가능)
  - ☞ 계약상대자가 지급범위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가능
  - ☞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는 경우 미지급 가능
- 다. 채권확보 :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상대자로부터 보증서(금융기관이 발행한 선금지급보증서, 보험회사가 발행한 선금보증보험증권 등)를 확보하여야 함

### 5. 하자보수보증금을

- 가. 철도, 댐, 터널, 철강교설치, 발전설비, 교량, 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 계약금액의 100분의 5
- 나. 공항, 항만, 석도설치, 방파제, 사방, 간척 등 공사 : 계약금액의 100분의 4
- 다. 관개수로, 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 매립, 상하수도관로, 하천, 일반건축 등 공사 : 계약금액의 100분의 3

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사 외의 공사 : 계약금액의 100분의 2

마. 물품의 제조 : 계약금액의 100분의 3

바. 수리, 가공, 구매, 용역 : 계약금액의 100분의 2

## 6. 분할계약의 금지

가.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함

(단,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와 다른 공종과 시공 장소(작업 위치)가 달라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발주 가능)

나.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함

## 7.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대상

### 가. 물품·용역(공사는 제외)

□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 나.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지식기반사업 등

※ 구매 입찰관련 주요 참고 사이트

○ 나라장터 (http://www.g2b.go.kr)

The screenshot shows the G2B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search bar and navigation tabs. The main content area includes a search section for tenders and a sidebar with various links. A red box highlights the '나라장터 이용가이드' (G2B User Guide) link in the sidebar.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http://shopping.g2b.go.kr)

The screenshot shows the G2B Shopping Mall website. It features a search bar, a category menu, and a main content area. A red box highlights a list of notices in the '쇼핑도우미' (Shopping Assistant) section.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보조회(www.socialenterprise.or.kr)

○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생산물 조회(http://goods.koddi.or.kr)

○ 누리장터(nuri.g2b.go.kr)



2021년 배분사업 수행안내

---

## 9. 문서작성 및 관리





## 9. 문서작성 및 관리

### 1. 문서 작성방법

#### 가. 문서의 종류

- 기안문 : 외부로 발송되는 공문기안, 내부업무에 필요한 내부결재 기안, 예산집행을 위한 예산집행 기안 등의 3가지 양식으로 구분됨
- 시행문 : 외부 기관에 발송하는 공문으로, 기안문 중 공문기안과 동일하나 내부자의 결재가 없고, 관인이 날인되어 있음

#### 나. 문서 작성

- 수신기관의 표시
  - 수신란에는 수신기관의 장의 명칭 기입 (예시 : ○○회장, ○○복지관장)
  - 수신기관이 2개 기관 이상일 때는 수신란을 “수신처 참조”로 작성하고, 문서의 발신명 의란 아래 왼쪽 기본선에 맞추어 “수신처”라고 쓰고 수신기관명을 표시한다.
- 문서번호의 표시 : 기관명, 연도, 일련번호로 기입 (예시: 모금회 2014-121호)
- 문서제목의 표시 : 문서의 성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표시 (예시 : ○○회의 개최, ○○사업 조사 시행, 대상자○○○ 의뢰, ○○서비스 신청 등)
- 시행문 작성 및 발송 : 시행문에는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등을 표시
- 보도자료의 실명제공 : 언론기관에 보도자료 배포 시 담당부서, 주책임자, 담당자,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 제공

#### 다. 문서의 결재 : 모든 문서의 관련자 성명 표시는 자필로 실명기재

- 대상문서 : 기안문, 보고서, 계획서, 접수문서의 공람, 선람 및 각종 대장의 결재 등 관련자의 성명을 표기토록 되어 있는 문서
- 제외문서 : 예산회계법 등 각종 법령에 의거 관련자의 인장을 날인토록 되어있는 문서는 종전과 같이 인장 날인

## 2. 문서관리 방법

가. 등록, 보존 대상문서 : 발송을 전제로 한 문서뿐만 아니라 발송을 전제로 하지 않는 내부 결재 문서 등 모든 문서를 포함

- 내부결재문서 : 기안문에 의한 내부결재 뿐만 아니라 보고서, 계획서, 회의자료, 회의록 등 발송을 전제로 하지 않는 모든 결재문서
- 등록 시기 :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후 즉시
- 일반결재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의 처리절차

결재 - 문서등록 - 시행문작성 - 문서심사 - 관인날인 - 발송

### 나. 문서의 보존기간

- 문서수발과 관계된 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 보존'이며, 일반적으로 문서 보존기간은 해당기관의 조직의 특성과 업무를 감안하여 부여함
- 모금회의 지원사업 관련 문서는 사업 종료 후 최소 5년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함



2021년 배분사업 수행안내

---

## 10. 차량지원사업 지침



# 10. 차량지원사업 지침

## 1. 배분차량관리 기본사항

### 가. 적용범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배분한 모든 차량

### 나. 배분차량 주요 원칙

- 사업 계약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차량종합보험가입을 유지
- 사업 계약기간 종료이전에 매각(수출말소 포함) 및 폐기처리는 원칙적으로 불가
- 차량 폐차는 관청에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만 가능
- 반납 또는 환수된 차량의 경우 해당지역에 재배분
- 도난 및 완파 시에 대한 보상금은 반납 처리 또는 차량의 재구입만 가능
- 사업수행기간 내에 모금회 표시 및 도색변경은 불가하나 최초 배분계약일로부터 8년이 경과한 차량은 모금회 표시 및 도색 제거 가능

## 2. 배분계약기간 만료 전 차량 관리

### 1) 주요내용

- 배분계약기간(5년)동안 매년 연간보고서 제출 (별첨1. 양식 참고)
  - 연간보고서 제출 시 차량운행/정비일지(별첨2. 양식 참고), 자동차보험가입증서, 자동차 등록 원부, 차량 내·외부 사진 등 제출
  - ※ 차량운행/정비일지의 경우 배분기관 내부 양식을 사용할 수 있으나 별첨 서식의 관리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차량 외장에 모금회 지원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차량 인수 당시와 동일하게 외장을 유지

### 3. 배분계약기간 만료 후 차량 관리

- 배분계약기간이 만료 된 차량의 경우 모금회 사전 승인 후 매각(수출말소 포함), 폐차, 반납 등 차량 처분 가능
  - 배분기관 자체적으로 차량 처분 할 수 없음
  - 다음의 관련서류 중 필요자료를 제출하고 모금회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관련서류 : 차량배분계약서, 차량사진(도색확인), 차량등록증, 차량감정평가서(또는 중고차매매법인업체의 견적서), 차량정비내역서(또는 차량검사표, 차계부, 1급정비사 소견서 등) 사본 각 1부.

### 4. 최초 배분계약일로부터 8년이 경과한 차량 관리

- 9년이 경과한 배분차량의 처분 등 권리이양
  - 배분차량의 매각(수출말소 포함), 폐차 등 처분을 포함한 차량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는 수행기관에 이양
  - 단, 매각(수출말소 포함)을 위해서는 ‘모금회 표시 및 도색 제거 확인 후’ 처분 가능
    - ※ 2018. 3. 31 이전 배분 차량은 권리이양 가능연수 8년 임
    - ※ ‘복권기금 차량지원 사업’으로 배분된 차량은 내용연수에 관계없이 ‘권리이양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 ※ ‘권리이양 안내’에도 불구하고 ‘모금회 표시 및 도색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관의 경우도, 권리이양 안내 시점부터 폐차처분은 가능함. 단, 추후 매각 필요시에는 반드시 모금회로부터 도색제거 확인을 받아야 함

## 5. 어린이 보호차량 관련 유의사항

### 가.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대통령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나. 유의사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202X. 11. 27 시행)에 따라 어린이 통학 버스 운영 시설의 적용 범위 확대
  -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 포함
- 도로교통법 상의 어린이(만13세 미만)가 단 한명이라도 통학 등을 위해 자동차를 이용한다면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구매
  - 조달청에 그랜드스타렉스 어린이 보호차량 Lpi 및 디젤 모델 판매
    - ※ 옵션품목 안전벨 필수 선택 반영 : 법규사항
  - 기존 지원 차량도 법 시행 6개월 이내(2021. 5. 27)에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으로 튜닝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
-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구매하는 경우 모금회 전용도색[빨간라인] 적용 불가
  - 랩핑으로 모금회명 로고, 배분기관명 로고만 차량 적정 부근에 부착하여 사용
- 어린이 보호차량 신고 필수
  - 어린이 보호차량은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
  - 기존 지원 차량도 법 시행 6개월 이내(2021. 5. 27)에 어린이통학버스 요건(황색도색, 표시등 설치 등)을 갖추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
-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의무 준수
  -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 참조
  - (예. 통학버스 신고,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보호자 동승표시,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 등)











2021년 배분사업 수행안내

---

## 11. 온라인배분신청시스템 사용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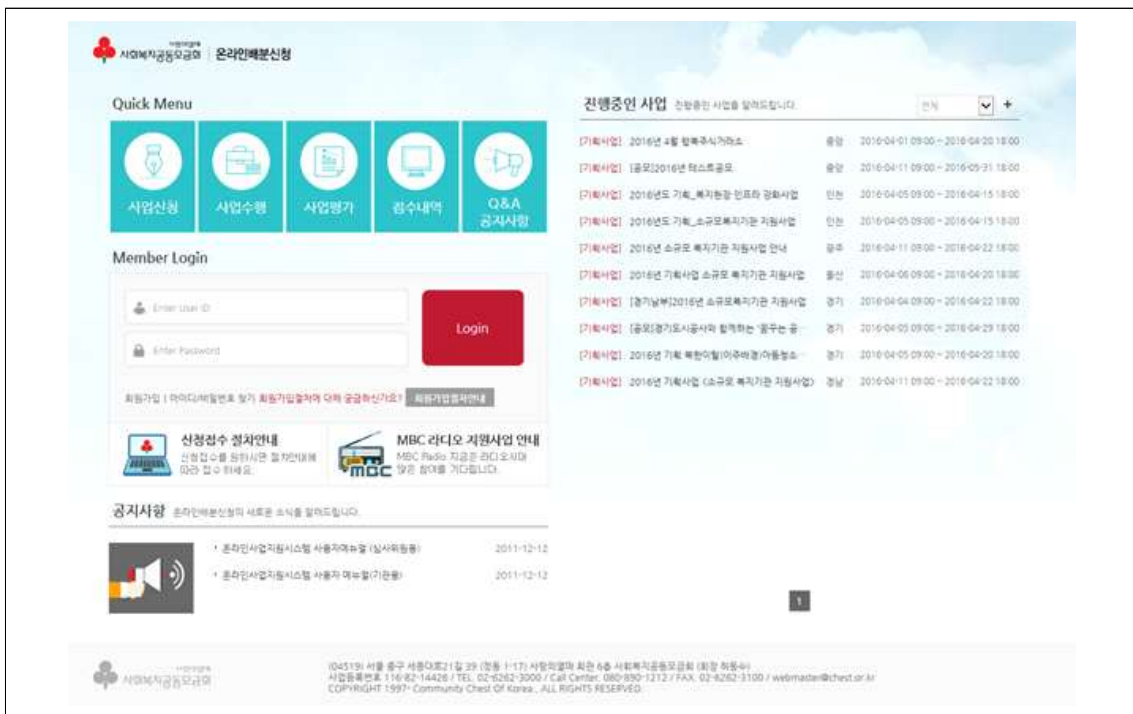


# 11. 온라인배분신청시스템 사용안내

## ○ 온라인배분신청시스템 - 사용기관 매뉴얼

- 온라인사업지원시스템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제공하는 각종 배분사업을 수행하는 배분기관을 대상으로 배분사업의 신청접수 및 수행중인 배분사업의 각종 보고서 등을 등록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 온라인배분신청시스템 메인화면(<http://proposal.chest.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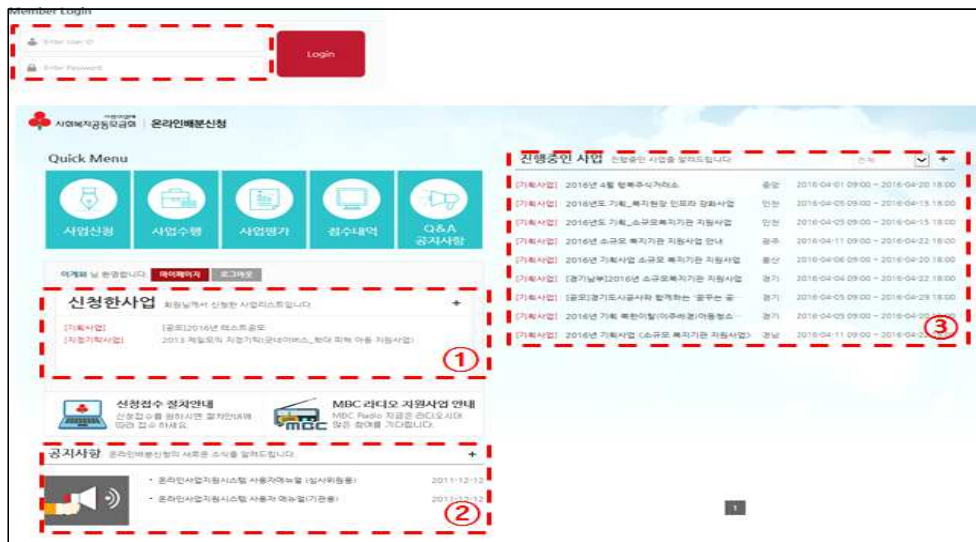


▶ 온라인사업지원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주요기능

구분	제공기능
사업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금회에서 진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정보 조회 및 신청 기능</li> <li>- 모금회에서 진행하는 각종 비공모사업에 대한 신청 기능</li> </ul>
사업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 진행하는 사업의 관리기능</li> <li>- 조정사업계획서 제출등록 기능</li> <li>- 사업/예산 변경신청 및 확인</li> <li>- 중간보고서 제출</li> <li>- 결과보고서 제출</li> <li>- 차량연간보고서 제출</li> </ul>

## ▶ 로그인

- <http://proposal.chest.or.kr> 접속하여 메인화면 좌측의 아이디/패스워드 입력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의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사랑의열매 홈페이지(chest.or.kr) 회원가입과 별도로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가입이 필요합니다.



- ① 신청한 사업 : 기관에서 신청한 사업목록이 보입니다.  
각 사업명을 클릭 시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② 공지사항 : 모금회에서 공지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메뉴입니다.  
클릭 시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③ 진행중인사업 : 모금회에서 접수 중인 사업목록입니다. 사업명을 클릭하여 상세내용을 확인하거나 상세화면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해당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The screenshot shows the '아이디/비밀번호찾기' page. It has a header with the logo and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온라인배분신청'. Below the header is a search bar with '아이디찾기' and '비밀번호찾기' buttons. There is a checkbox for '배분대상' (Eligible for Distribution) and a red note: '\*실사위원의 경우 관리자에게 문의해주세요.' Below this is a form with fields for '기관명' (Institution Name) and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and a '아이디찾기' button.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를 통하여 기관의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시 입력한 기관명과 정확히 일치(띄어쓰기, 특수문자 등)해야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 보고서 등록\_조정사업계획서

- 사업수행 > 조정사업계획서 등록 메뉴를 클릭하면 해당기관의 수행사업리스트가 검색됩니다. 수행 사업리스트가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연도 및 사업진행여부를 전체로 두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조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을 선택하여 조정사업계획서 첨부파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조정사업계획서등록**

수행사업리스트

수행년도	사업구분	사업명	프로젝트명	사업수행기간	담당자
2015	지방기후사업	2015.05.06. 대한적십자사. 희망복지 프로젝트(지역계층.결연대상)	2015.05.06. 대한적십자사. 희망복지 프로젝트(지역계층.결연대상)	2015-05-01 - 2015-07-31	홍상우
2013	지방기후사업	2013.05.06. 희망복지 프로젝트(지역계층.결연대상)	희망복지.희망맞이하기	2013-06-01 - 2013-12-31	최윤정

조정사업계획서 등록리스트

등록일	조정계획서 파일명	담당자	연락처
2015-05-06	(2015.05.06.05) 지방기후사업 희망복지 프로젝트(지역계층.결연대상) 및 통장사본.pdf	홍상우	02-3705-3635

조정사업계획서 등록 - 조정사업계획서 제출 기준이 아닙니다. (기간: 2015-05-06 ~ 2015-05-07)

등록일: 2015-05-06

조정계획서: (2015.05.06.05) 지방기후사업 희망복지 프로젝트(지역계층.결연대상) 및 통장사본.pdf

찾아보기

파일명 첨부하시면 기존 파일이 지워집니다.

**저장**

- 저장버튼을 클릭 후 “저장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확인하면 제출이 완료됩니다. 첨부파일의 용량이 10MB를 초과할 경우 정상 저장 되지 않으므로 파일크기를 꼭 확인하여 주십시오.

▶ 보고서 등록\_중간보고서

- 사업수행 > 중간보고서 등록 메뉴를 클릭하면 해당기관의 수행사업리스트가 검색됩니다. **수행사업리스트가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연도 및 사업진행여부를 전체로 두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중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을 선택하여 중간보고서 등록내용을 입력한 후에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중간보고서 제출작업을 완료 합니다.

The screenshot shows a web application interface for reporting. At the top, there are navigation tabs: '사업신청', '사업수행', '사업평가', '검수내역', and 'Q & A 공지사항'. Under '사업수행', there are sub-menus: '사업전행현황', '조정사업계획서등록', '계약서 출력', '사업/예산 변경등록', '중간보고서 등록', '결과보고서 등록', and '차량면간보고서 등록'.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중간보고서등록' and includes a breadcrumb '사업수행 > 중간보고서등록'. Below this is a '수행사업리스트' table with columns for '수행연도', '사업구분', '사업명', '프로젝트명', '사업수행기간', and '담당자'. A red arrow labeled '1' points to the table header, and another labeled '2' points to a specific row. Below the table is a '중간보고서 등록리스트' table with columns for '차수', '프로젝트명', '사업보고기간', '제출예정일', '제출일', '담당자', and '연락처'. A red arrow labeled '3' points to a row in this table. Below that is the '중간보고서 등록' form with fields for '사업명', '프로젝트명', '총배분금', '사업실적(승인횟수)', '사업보고기간', '담당자', and '첨부파일'. A red arrow labeled '4' points to the '수정' button at the bottom of the form.

- 수정버튼을 클릭 후 “수정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확인하면 제출이 완료됩니다. 첨부파일의 용량이 10MB를 초과할 경우 정상 저장 되지 않으므로 파일크기를 꼭 확인하여 주십시오.





▶ 보고서 등록\_차량연간보고서

- 사업수행 > 차량연간보고서 등록 메뉴를 클릭하면 해당기관의 차량리스트가 검색되고, 차량리스트에서 프로젝트명을 클릭하면 차수별 연간보고서 리스트가 검색됩니다. 프로젝트명을 클릭해서 연간보고서 (운행거리, 횡수, 주요내용, 정비내용, 사고 및 수리내용, 범칙금내역)를 입력 후,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연간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차량연간보고서 등록**

차량리스트

수행년도	사업구분	사업명	프로젝트명	사업수행기간	차종	차대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량소유자
2015	차량기탁사업	2015년 한국수출입은행 차량기탁사업	코스모스로 향하는 희망의 봄봄이	2015-05-26 - 2020-04-30	1	1	1	1

연간보고서 등록리스트

차수	프로젝트명	제출예정일	등록일	등록자
1	코스모스로 향하는 희망	2016-04-14 - 2016-04-16		

연간보고서 등록

차수: 1  
 사업명: 2015년 한국수출입은행 차량기탁사업  
 프로젝트명: 코스모스로 향하는 희망의 봄봄이  
 수행기간: 2015-05-26 - 2020-04-30  
 차종: 1  
 차대번호: 1  
 차량등록번호: 1

연간 운행거리(km): 20000  
 주요 운행내용: 1일 평균 운행횟수 (주5일 기준): 5  
 기타 운행내용: 1일 운행 시 서비스 제공 대상자 평균 수: 5

정비: 2016-04-15 10:00  
 사고 및 수리내용: 2016-04-15 10:00  
 교통법규위반 수: 2016-04-15 10:00  
 범칙금 납부: 2016-04-15 10:00

저장

▶ 추가버튼: 정비, 사고 등의 내역에서 빈 항목을 추가하기 위해 사용  
 ▶ 내역삭제: 기재출하신 정비, 사고 등의 내역을 삭제하기 위해 사용

- 저장버튼을 클릭 후 “저장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확인하면 제출이 완료됩니다. 첨부파일의 용량이 10MB를 초과할 경우 정상 저장 되지 않으므로 파일크기를 꼭 확인하여 주십시오.

**\* 각종 보고서 등록 시 유의사항**

**1. 저장버튼을 클릭하였으나 “저장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뜨지 않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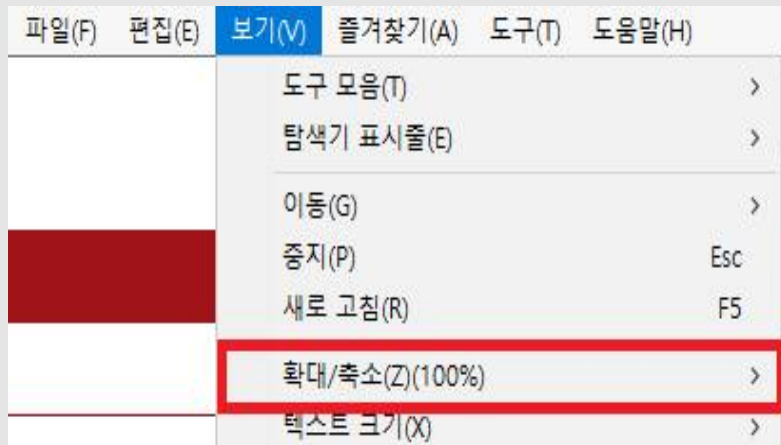
- 조정사업계획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차량연간보고서 등 첨부파일의 용량이 10MB를 초과할 경우 정상 저장 되지 않으므로 첨부파일 크기를 꼭 확인하여 주십시오.
- ☞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그림파일 용량줄이기” 등으로 검색하면, 한글 등 문서의 파일용량 줄이는 다양한 방법 등 확인 가능

**2. 저장버튼 클릭 후 “입출력 에러가 발생하였습니다” 메시지가 뜨는 경우**

- 첨부파일의 파일명이 너무 긴 경우 발생합니다. 첨부파일의 파일명 글자를 10자(한글 기준)내로변경 하신 후 저장하여 주십시오.
- 형식에 맞게 내용이 기입되지 않은 경우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숫자만 기입하는 란에 한글 혹은 특수문자 등을 입력할 경우 발생합니다. 기입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십시오.

**3. 보고서 “저장” 버튼이 보이지 않는 경우**

- 컴퓨터의 해상도가 낮게 설정되어 있을 경우 “저장” 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 컴퓨터의 해상도가 1280 X 1024 이상인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 해상도 설정 이후에도 “저장” 버튼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익스플로러 메뉴 중 “보기”에서 “확대/축소” 비율을 90% 이하로 낮추신 후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온라인배분신청시스템에 제출된 각종 문서자료는 가장 최근에 등록된 자료만을 관리합니다. 따라서 기존 자료의 변경등록이 되는 경우 기존의 파일은 삭제됩니다.

5.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는 인터넷익스플로러11에 최적화 되어있으며 크롬 등 타 브라우저에서는 정상 작동되지 않습니다.

▶ 사업 및 예산 변경 신청 및 승인내역 확인

- 사업수행 > 사업/예산변경등록 메뉴를 클릭하면 기관의 수행사업리스트가 검색됩니다. 사업 및 예산을 변경해야 할 사업을 선택한 후 “신규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공문과 사업계획서 수정본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예산 변경 등록**

수행사업리스트

수행년도	사업구분	사업명	프로젝트명	사업수행기간	담당자
2015	지방기탁사업	2015.상반기.다문화청소년.안전훈련소.연습	안전 훈련소.연습(SAFE PLUS VILLAGE)	2015-09-08 ~ 2016-08-31	김승훈
2015	지방기탁사업	2015.상반기.다문화청소년.2016년.설.1.1.연습.및.사회복지시설.물품지원	2016년.설.및.1.취약계층.및.사회복지시설.물품지원	2015-12-01 ~ 2016-04-30	홍상우

사업/예산 변경 등록리스트

차수	등록일	제목	진행상태	담당자	면적서
1	2016-04-14	2015.상반기.다문화청소년	미처리	김승훈	02-3705-3838

사업/예산 변경 등록

해당기관에서 신청한 사업/예산변경건의 모금회 회신공문 확인 및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예산변경

수정계획서

사업/예산변경을 추가 할 경우, 신규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새로 등록합니다.

- 사업/예산 변경 등록리스트에서 모금회 처리상태(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상태가 승인/미승인일 경우에는 관련 공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쇄할 수 있습니다.

## ▶ 사업평가

- 사업평가 메뉴를 클릭하면 종료된 사업의 평가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업평가						
수행년도	사업구분	사업명	사업수행기간	담당자	수행시작일	수행종료일
2014	기획사업	2014 양천구거소특시민지원사업_기관배분	2014-05-01 - 2014-12-31		2014-05-01	2014-12-31
2013	기획사업	2013양천구거소특시민지원사업_기관지원	2013-09-01 - 2013-12-31		2013-09-01	2013-12-31
2012	기획사업	2010태마_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통합지원사업	2012-05-01 - 2013-04-30	김수진	2012-05-01	2013-04-30
2012	기획사업	2012 양천구거소특시민지원사업_기관지원	2012-07-01 - 2013-06-30		2012-07-01	2013-06-30
2011	기획사업	양천구거소특시민지원사업	2011-06-24 - 2012-04-30		2011-06-24	2012-04-30

## ▶ 마이페이지

- 마이페이지를 클릭하면 기관의 정보(주소, 전화번호 등) 및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기관명 및 대표자 등 기관의 주요 정보 변경은 소속지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온라인배분신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닉네임입니다.
마이페이지
로그아웃

사업신청
사업수행
사업평가
접수내역
Q & A 공지사항

### 마이페이지

계정정보

아이디: cdk

사용자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관 정보 \*기관정보 수정 시 비밀번호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1168214426

지회: 중앙

기관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분할주체:  검색

주소:  우편번호검색

서울특별시 중구 경동 1-17번지 사당리업체회관 6층

대표자:

이메일:

기관대표전화:

팩스번호:

사업종류: 기타

설립년월:

신고여부:  신고  과신고

수정

신청한 사업리스트

수행년도	사업구분	사업명	사업수행기간	담당자	연락처	신청일자	진행상태
2016	기획사업	2016 삼성과 서당의열매가 함께하는 나눔과 꿈 사업	2016-07-29 - 2017-07-29	홍길동	02-6262-3000	2016-08-22	접수중





2021년 배분사업 수행안내

---

## 12. 개인정보보호 안내(관련 준수사항)





## 12. 개인정보보호 안내(관련 준수사항)

### 1. 개인정보 개요

#### 가. 개인정보의 개념

-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 연령, 주소 등 개인에 대한 객관적 정보는 물론 개인에 대한 의견, 평가 등 제3자에 의해 생성된 주관적인 정보도 개인정보의 범위에 포함
- ※ 정보주체와 관련성이 있다면, 해당정보가 반드시 사실이거나 증명될 필요도 없으며, 심지어 부정확한 정보 또는 허위의 정보라도 가능

#### 사회복지시설·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예시

- ◆ 개별 상담프로그램: 심리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 및 일상생활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상담 실시 및 상담카드 작성
- ◆ 독거노인 방문 서비스: 홀로 거주하는 노인들의 생활실태 및 복지수요 조사, 정기적인 안전 확인을 수행하고 기록
- ◆ 노인 일자리 사업: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신청서를 받고, 경력 및 서류 확인 후 일자리 안내

#### 나. 개인정보 보호 원칙

-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이 정보주체의 동의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개인정보가 내부자의 고의나 관리 부주의 또는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함.

#### 다. 법령의 적용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존엄과 가치 구현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법임
-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해당 법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 ※ 단,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하위 규정으로 개인정보처리에 관해 규정하는 경우에는 우선적 적용에서 제외

##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수집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으며, 개인정보는 수집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함

### 가. 개인정보 수집 요건

□ 사회복지시설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이전에 다음의 수집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 - 정보주체(이용자, 입소자, 근로자 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는 방법

◆ 정보주체(이용자 등)에게 다음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1) 수집·이용 목적 2) 수집 항목 3) 보유 및 이용기간 4) 동의거부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이 있다면 그 내용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입소자 및 퇴소자의 명부,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입소자 및 퇴소자의 명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등)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 바우처사업(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위하여 성명, 연락처, 보호자 성명 및 연락처, 장애인 등급 등은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정보에 해당
- 장애인, 노인 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 ※ 채권추심 등과 같이 사회복지시설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나. 최소한 수집 원칙과 입증책임

-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사회복지시설이 부담(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이용자 등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 됨

#### 다.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

-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필요
-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수집·이용 가능 (별도 동의만으로 처리할 수 없음)

#### 고유식별정보 & 민감정보

-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민감정보**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등

- 법령에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별첨] 참조

#### 라. 금지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금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 마. 14세 미만의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 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함.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예: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는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수집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신분과 연락처,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해당 아동에게 알려야 함.

###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를 법령에서 정한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단, 주민등록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 확인

※ 각종 보고서 제출 시 대상자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가. 제3자 제공 요건

-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 이용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제3자 제공을 위해 동의받는 방법

- ◆ 이용자 등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국외의 제3자 제공도 동일)
  - 1) 제공받는 자,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6이용기간, 5) 동의거부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금지되는 개인정보 제공 행위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금지(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 4. 개인정보 업무처리의 위탁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함. 이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이용자 등이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함.

### 가. 위탁 방법

-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용자, 입소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업무(의료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등)를 위탁하는 경우 아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및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수탁자 준수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의 구분

- ◆ 제3자 제공 : 제3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
- ◆ 업무위탁 : 처리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리자의 감독 하에) 제3자로 하여금 처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

### 나. 수탁자의 의무

-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이용자 등이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사업자 등의 보기 쉬운 장소를 통해 공개하여야 함
-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함
-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위탁자의 소속직원으로 간주함
-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사회복지시설)에게 보고하여야 함

## 5.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는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파기하여야 함

### 가. 파기 대상

- 개인정보 파기대상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
  - 사회복지시설 사업을 폐업한 경우

### 나. 파기 시기

-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
  -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 파기
- 이용자가 사회복지시설 이용을 종료한 경우, 이용을 위하여 수집하였던 등록 카드 등의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는 것이 원칙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경우 그 법령에 따라 보존하되, 해당되는 정보를 기존에 보관했던 파일에서 분리하여 보관
    - ※ <예시> 국제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등)에 따라 거래관계의 증빙 자료(영수증, 전표 등)는 5년간 보존
-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했던 이용자에게 **홍보·마케팅**을 위한 안내물(이메일, 전화, 단문메시지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목적, 항목, 보유기간 등을 고지하고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함.**
  - 사회복지시설 등이 폐업하거나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5일 이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 ※ 인쇄물은 파쇄 또는 소각, 전자적 파일은 정보 파기용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여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

#### 다. 파기 방법(시행령 제16조)

- 종이 등 기록매체의 파쇄 또는 소각
  -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파쇄 또는 소각
  - 종이 서류는 관련 협회를 통해 공동으로 파기하는 경우 파기를 위한 절차에 따라 분기·반기별로 일괄 파기할 수 있음 (이 경우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함)
- 전자파일의 영구 삭제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전자적 파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 경과 후 5일 이내에 파기하여야 함

### 6.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

- 개인정보 침해 시 최초로 인지한 직원은 즉각 시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보고하고 즉각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
- 이용자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함.
- 홈페이지 등에 개인정보 공개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항목은 마스킹처리(홍\*동)로 대체하는 등 노출방지 노력 필요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시 지체 없이 (5일 이내) 정보주체에 유출 사실 통지
- 1천 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시 지체 없이(5일 이내) 안전행정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함.

### 7. 기타 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는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함
- 세부내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http://www.privacy.go.kr))-자료마당-지침자료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약국,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편)”참고
- 개인정보보호 상담문의센터 : 118

[별첨] 법령에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처리를 허용한 경우

법령명	규정내용
<p>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p>	<p>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9조, 제12조 및 제13조와 이 영 제25조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li> <li>2. 법 제9조에 따른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무</li> <li>3. 법 제10조에 따른 지도와 훈련에 관한 사무</li> <li>4. 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li> <li>5. 삭제</li> <li>6. 법 제1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li> <li>7. 법 제13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교육에 관한 사무</li> <li>8. 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li> <li>9. 법 제30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합병에 관한 사무</li> <li>10.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li> <li>11. 삭제</li> </ol> <p>② 보건복지부장관(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에 관한 사무</li> <li>2. 법 제11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li> <li>3. 법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무</li> <li>4. 법 제44조에 따른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무</li> </ol>
<p>노인복지법 시행령</p>	<p>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23조의2에 따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33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li> <li>2. 법 제35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li> <li>3. 법 제37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li> <li>4. 법 제39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li> <li>5. 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관리,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사무</li> <li>6. 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청문에 관한 사무</li> <li>7. 법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li> <li>8. 법 제39조의10에 따른 실종노인의 신고에 관한 사무</li> <li>9. 법 제39조의11에 따른 조사 등에 관한 사무</li> <li>10. 법 제39조의13에 따른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li> <li>11. 법 제40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변경 등 신고에 관한 사무</li> <li>12. 법 제44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li> <li>13. 법 제50조에 따른 심사청구 등에 관한 사무</li> <li>14. 법 제6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li> <li>15. 제17조의3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무</li> </ol>
<p>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3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38조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p>



법령명	규정내용
	<p>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li> <li>2. 법 제42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사무</li> <li>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법 제31조제3항, 제38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해당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에 관한 사무</li> <li>2. 삭제</li> <li>3. 법 제9조에 따른 수급자격 심의 등에 관한 사무</li> <li>4. 법 제1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갱신에 관한 사무</li> <li>5. 법 제14조에 따른 활동지원등급의 변경에 관한 사무</li> <li>6. 법 제19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제한 또는 정지에 관한 사무</li> <li>7. 법 제19조의2에 따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li> <li>8.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li> <li>9. 법 제28조에 따른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li> <li>10. 법 제29조의2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무</li> <li>11. 법 제35조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li> <li>12. 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li> <li>13. 법 제42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사무</li> <li>14. 제27조에 따른 긴급활동지원에 관한 사무</li> </ol> </li> </ol>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p>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민연금공단(제1호 및 제1호의2의 사무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등에 관한 사무</li> <li>1의2. 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관한 사무</li> <li>1의3. 법 제34조에 따른 재활상담 등의 조치에 관한 사무</li> <li>1의4. 법 제38조에 따른 자녀교육비 지급에 관한 사무</li> <li>2. 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에 관한 사무</li> <li>2의2. 법 제41조에 따른 자금 대여에 관한 사무</li> <li>3. 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지급에 관한 사무</li> <li>4.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li> <li>4의2. 법 제59조의3에 따른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무</li> <li>4의3. 법 제59조의10에 따른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무</li> <li>5. 삭제</li> <li>6. 제13조의2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사무</li> <li>7. 제17조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에 관한 사무</li> <li>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72조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증 및 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무</li> <li>2. 법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li> <li>3. 법 제74조에 따른 국가시험 응시자격의 확인에 관한 사무</li> </ol> </li> </ol>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p>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p>

법령명	규정내용
	<p>보를 처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8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신청</li> <li>2. 법 제9조에 따른 소득·재산 또는 장애등급에 관한 조사</li> <li>3. 법 제10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li> <li>4. 법 제11조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li> <li>5. 법 제14조에 따른 미지급 장애인연금</li> <li>6. 법 제15조에 따른 수급권의 소멸과 지급정지</li> <li>7. 법 제16조에 따른 신고의 의무</li> <li>8. 법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환수</li> <li>9. 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li> <li>10. 법 제22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li> </ol>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p>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제10조, 제10조의3, 제13조, 제34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li> <li>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무</li> <li>3.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연계 사업에 관한 사무</li> <li>3의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및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 지원에 관한 사무</li> <li>3의3. 법 제1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중독 문제와 관련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li> <li>4. 법 제17조제1항, 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부여, 보수교육 실시 및 자격 정지·취소에 관한 사무</li> <li>5.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개설·설치 결정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li> <li>6.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허가 및 설치 결정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li> <li>7.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li> <li>8. 법 제44조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입원의 진단, 의뢰, 호송을 위한 도움 요청에 관한 사무</li> <li>9. 법 제51조에 따른 신상정보 확인, 결과 통보, 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확인 요청에 관한 사무</li> <li>10. 법 제53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심의, 심사 및 조사 요청에 관한 사무</li> <li>11. 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 및 제59조에 따른 퇴원등의 심사 청구 처리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한 사무</li> <li>12. 법 제60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 처리 및 심사에 관한 사무</li> <li>13. 법 제62조에 따른 입원의 해제에 관한 사무</li> <li>14. 법 제63조에 따른 임시 퇴원의 경과 관찰에 관한 사무</li> <li>15.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등에 관한 사무</li> <li>16. 법 제6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지도·감독 및 심사와 그에 따른 명령에 관한 사무</li> <li>17. 법 제67조에 따른 입·퇴원등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li> </ol> <p>②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또는 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47조에 따른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 심사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한 사무</li> </ol>

법령명	규정내용
	<p>2.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p> <p>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41조에 따른 입원등 및 퇴원등에 관한 사무</li> <li>2. 법 제42조에 따른 입원등 및 퇴원등에 관한 사무</li> <li>3. 법 제43조에 따른 입원등 및 퇴원등에 관한 사무와 입원등 기간 연장 심사 청구에 관한 사무</li> <li>4. 법 제44조에 따른 입원에 관한 사무</li> <li>5. 법 제50조에 따른 입원 및 퇴원에 관한 사무</li> <li>6.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퇴원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li> <li>7.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원등 및 입원등의 기간 연장 심사에 관한 사무</li> <li>8.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임시 퇴원등에 관한 사무</li> <li>9.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청구에 관한 사무</li> <li>10.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무단으로 퇴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탐색 요청에 관한 사무</li> <li>11.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입·퇴원등관리시스템 등록에 관한 사무</li> <li>12.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특수치료에 관한 사무</li> </ol> <p>④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43조제1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진단에 관한 사무</li> <li>2. 법 제44조제1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진단·보호 신청 및 진단에 관한 사무</li> <li>3.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진단에 관한 사무</li> <li>4.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진단에 관한 사무</li> <li>5.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진단에 관한 사무</li> </ol> <p>⑤ 협의체의 구성원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특수치료의 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2021년 배분사업 수행안내

---

## 13. 부록 : 사업관련 참고 양식



# 13. 부록 : 사업관련 참고 양식

## <표준현금출납부 양식>

연번	증빙일자	증빙종류	증빙금액	거래처명	내역	결의서 번호	세목	계정	유형	근거자료	잔액(참고)
1	20xx/1/3	수입 결의서	10,000,000	모금회	후원금 수입	1	후원금수 입	배분 지원금	입금	-	10,000,000
2	20xx/1/16	카드전표	50,000	코야마트	다과구입	2	캠프 사업비	회의비	인출	다과비산 출표	9,950,000

※ 표준현금출납부에는 반드시 해당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금출납부 작성 방법>

연번(No.)	자동으로 기입되는 란 이므로 따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빙일자	지출결의서, 통장내역과 일치하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지출결의서와 통장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통장내역에 우선하여 작성 부탁드립니다.
증빙종류	증빙 종류로는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지급증, 수입결의서, 사업비반납, 간이영수증, 기타로 총 8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수취하신 영수증에 맞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증빙금액	통장 내역과 일치하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거래처명	영수증 및 지출결의서에 기재된 거래처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내역	지출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서 번호	각 행의 내역이 어느 지출결의서의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한 칸 이므로 해당내역의 지출결의서 번호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세목	각 행의 내역이 정산보고서상 어느 세목에 해당하는 내역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칸 이므로 각 내역의 해당 세목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계정	각 행의 내역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의 계정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유형	유형에는 송금, 인출, 입금, 재입금, 이자수입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송금> 사업비 집행 시 계좌입금 처리했을 경우 선택해주세요. <입금> 모금회 지원금이 입금되었을 경우 선택해주세요. <인출> 사업비 집행 시 전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선택해주세요. <재입금> 사업비 집행 이후에 결제를 취소 하시거나 이미 집행된 내역 중 일부가 반환된 경우 선택해주세요. <이자수입> 이자가 입금된 경우 선택 해주세요.
근거자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수행안내자료의 23p에 나와있는 지출내역별 추가 증빙 서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신 내역에 대하여 작성 부탁드립니다. 예) 강사비를 지급하신 경우 - 강사이력서, 지급증, 이체증을 근거자료에 작성 해주시면 됩니다.
잔액	잔액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단, 증빙종류와 증빙금액이 작성되어야 금액이 계산되므로 값이 비워져 있거나 에러 메시지가 나온다면 비워진 칸이 없나 확인 부탁드립니다.

※ 기본입력 시트와 정산보고서 시트는 정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셔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기타 참고양식>

■ 직원인건비, 단순인건비(아르바이트 등) 활동비, 강사비 등의 지급내역 작성 예시

[직원인건비]

성명	김열매	소속	사랑의열매복지관 지역사회보호팀			급여지급연월	2019년 3월
근무기간	202x.1.1~현재	담당업무	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사업”전담				
급여액 (세전)	공제금액(소득세, 4대보험 등)					지급액 (세후)	수령확인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원	원	원	원	원	원	(인)

[강사비]

**지 급 증**

○ 지급액: 280,000원  
 (\* 세금 공제 후 실제 수령액은 다를 수 있음)  
 ○ 강의내용: 사회복지사업법 교육  
 ○ 교육일시: 20XX. 11. 30(금) 14:00~16:00

위 금액을 정히 수령합니다.

20XX년 11월 30일

○ 수령인 : 박 ☆ ☆ (인)  
 ○ 생년월일 : 0000년 00월 00일  
 ○ 주소: ○○도 ○○군 ○○구 ◇◇아파트  
 ○ 연락처: 010-xxxx-xxxx  
 ○ 소속/직위: ○○대학교 조교수  
 ○ 입금계좌: 농협/ xxx-xx-xxxxxx/ 박☆☆

**사랑의열매종합사회복지관**

[단순인건비]

**지 급 증**

○ 지급액: 35,000원  
 ○ 활동내역: 아동문화체험 보조교사  
 ○ 활동일시: 20XX. 12. 22(토) 10:00~16:00

위 금액을 정히 수령합니다.

20XX년 12월 22일

○ 수령인 : 김 ○ ○ (인)  
 ○ 생년월일 : 0000년 00월 00일  
 ○ 주소: ○○시 ○○구 ○○동 11-1  
 ○ 연락처: 010-xxxx-xxxx  
 ○ 소속: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입금계좌: 국민/ xxx-xx-xxxxxx/ 김○○

**사랑의열매종합사회복지관**

- 세금공제액이 발생할 경우, “지급액”에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 금액을 기입 또는 세금공제 후 지급이 되어 실제 수령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내용(문구)을 표기
- 강의 횟수(강사) 및 활동횟수(단순일용직)에 따라 월별지급이 가능하나, 월별 지급 시 지원 금액에 따라 세금 공제 후 지급하여야 함.
- 단순일용직(아르바이트 등) 활동비 월별지급 시 직원인건비 지급 양식에 준하여 지급
-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부득이한 경우로 현금지급 시 관련 기안에 현금지급사유 명시)

■ 다수인에 대한 지급명세표 작성예시

- 지원금으로 물품(상품권, 생필품 등)을 구입하여 직접 지원하는 경우에 작성함

연번	지급 일자	지급내용			수령인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수령 확인
		지급내역	수량	금액					
1	202x.10.2	문화상품권	2장	10,000원	이○○	xxxxxx	333-3333	양천구 목3동 23-3	Lee
2	202x.10.2	문화상품권	2장	10,000원	장○○	xxxxxx	247-4758	양천구 신월1동 23-3	張

※ 대상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

■ 온라인 강의 표준계약서

온라인 강의 표준계약서			
계약자	발주처	<수행기관명>	
	계약상대자	·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 미등록 시 주민번호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강사명>
		· 대 표 자	
· 연 락 처			
계약내용	강 의 명		
	강 의 유 형	<녹화형 강의/실시간 라이브 강의>	
	강 의 내 용		
	강 의 목 적	<강의 대상, 목적 등>	
	계 약 기 간	<영상 제작 기간 및 배포 기간 포함>	
	계 약 범 위	<영상 배포 방식, 배포장소(홈페이지, 포털 등 구체적 명시)>	
	결 제 금 액	<총 금액, 산출근거 명시>	
	결 제 방 법	<세금계산서/계좌이체>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기 타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의 콘텐츠의 저작권은 발주처와 모금회에 귀속된다.</li> <li>· 강의시작 전에 강의일시 및 장소, 강사, 강의강좌, 강의내용, 강의교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상호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li> <li>·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내용을 수행하지 않거나 성공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li> <li>·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한 바에 따른다.</li> </ul>		
<p>&lt;수행기관명&gt;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강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p> <p>붙임서류 : 1. 세부 강의안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주민번호 기재 시 필수 첨부)</p> <p>202X. . .</p> <p style="text-align: right;">&lt;기 관 명&gt; 대 표    ○ ○ ○ (인)</p> <p style="text-align: right;">&lt;법 인 명&gt; 대 표/강사 &lt;강 사 명&gt;    (인)</p>			





■ 비교견적(입찰)결과서

## 비 교 견 적 (입찰) 결 과 서

- 비교견적(입찰)건명 :
- 비교견적(입찰)예산 :
- 비교견적(입찰)수행 담당자 :
- 비교견적(입찰)대상 : 총 \_\_\_\_\_업체 비교견적(입찰)

번호	제안회사/업체/기관(인)명	제안금액(원)
1		
2		

- 비교견적(입찰) 결과일자 :     년     월     일 (\*\*결정일 기입)
- 비교견적(입찰) 결과 : (선정업체명 기입)
- 비교견적(입찰) 결과에 대한 근거

(\*\* 업체선정 사유 기입)

**사랑의열매종합사회복지관**

■ 물품검수조서

(앞면)

### 물 품 검 수 조 서

품 목 수 량	
납 품 처	
계 약 금 액	
계약체결 연월일	202x 년    월    일
납 품 기 한	202x 년    월    일
검수연월일	202x 년    월    일
검 수 장 소	
<p>위와 같이 검수하였습니다.</p> <p>202x 년    월    일</p> <p>검 수 자            직책            성    명            ①</p> <p>입 회 자            직책            성    명            ①</p>	
※ 2개 품목 이상 또는 분할 납품에 대하여 이면을 사용한다.	

(뒷면)

### 물 품 검 수 내 역 서

품목	규격	단위칭호	단가	계약상의 수량	전회까지 납품수량	금회 검수량	미납량	비 고





■ 서비스 이용 계약서

# 서 비 스 이 용 계 약 서

계 약 자

(갑) △△△ 복지관 대표

(을) 이용자 성명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이용서비스

○ 프로그램명 :

○ 이 용 기 간 :

계약조건

- 1.
- 2.
- 3.

본 계약에 있어 이의가 없으면 계약서에 간인 후 복사본을 “갑”과 “을”이  
1부씩 보관함.

20××년 ××월 ×일

(갑) △△△ 복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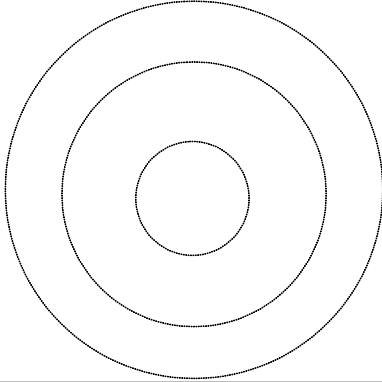
(을) 이용자 성명 (인)



■ 대상자관리파일

# 대 상 자 관 리 파 일

1. C't 일반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결혼상태		최 종 학 력		종 교			
가 족 사 랑	관 계	주인등록번호		동 거 여 부	장애여부	학력(비고)	
	①						
	②						
	③						
	④						
	⑤						
	⑥						
2. 경제상태							
월평균 수입		월평균 지출		부 채	병원비부채약간		
공 적 부 조	① 생계비 정부지원			책정년도			
	② 장애수당						
사 적 부 조	<input type="checkbox"/> 복지단체 (                    ) <input type="checkbox"/> 종교단체 (                    ) <input type="checkbox"/> 혈연 (                    ) <input type="checkbox"/> 기 타 (                    )						
주 거 상 황							
3. 건강. 장애 상태							
질 병	병 명			병 력			
	진료기관			유병기간			
	상 태						
※ 장 애	종 류			판정기관			
	상 태						
	보장구 유무			교부일자			
4. C't의 일상생활 상태							
대 화	(    ) 가능	(    ) 다소 어려움	(    ) 불가능				
보 행	(    ) 가능	(    ) 다소 어려움	(    ) 불가능				
식 사	(    ) 가능	(    ) 다소 어려움	(    ) 불가능				
탈 의	(    ) 가능	(    ) 다소 어려움	(    ) 불가능				
대소변 처리	(    ) 가능	(    ) 다소 어려움	(    ) 불가능				
5. 필요서비스 (0:C't의 욕구, 1:W'er 견해)							
가사	간병	정서	결연후원	의료	자립지원	교육	기타

<b>6. 면접내용</b>					
가. C't의 외양, 인지, 정서, 행동 등					
나. 표출된 문제의 심각성과 욕구의 정도					
<b>7. Family History(과거의 경력 등 기술)</b>					
<b>8. Family Map</b>			<b>9. Ecomap 및 사회적 지원의 정도</b>		
					① 위기 시 접촉인물
					② 긴급연락처
					③ 타 기관의 S 여부
<b>10. 기타 관찰된 특기사항</b>			<b>11. 비 고</b>		
① 신체적으로 폭행 당한 흔적	있다 (자세히:           ) / 없다	① T V	(    )	⑤ 전자렌지	(    )
② 자해여부	있다 (자세히:           ) / 없다	② 냉 장 고	(    )	⑥ 컴 퓨 터	(    )
③ 약물/알코올 남용여부	있다 (자세히:           ) / 없다	③ 가스렌지	(    )	⑦ 세 탁 기	(    )
④ 그 외 관찰된 특기사항	있다 (자세히:           ) / 없다	④ 밥    솔	(    )	⑧ 책    상	(    )
기타 :		⑨ 기    타	공기청정기, 정수기		
<b>12. Screening</b>					

■ 활동일지, 업무일지 등

## 활동일지(개인별 관찰일지)

		결 재			
		담당자	부 장	기관장	
(대상자성명)					
일 시	구 분	1/1	1/2	2/3	3/4
	장 소				
	활 동 목 표				
	활 동 내 용				
	활 동 으 로 인 한 변 화				
	활 동 중 특 이 점				
	사 회 복 지 사 의 과 업 및 역 할				

[업무일지]

## 업 무 일 지

		결 재		
		담당자	부 장	기관장
프로그램명		부 서 명		
진 행 일 시		담 당 자 (강사명)		
준 비 사 항				
참 석 자				
진 행 내 용				
프 로 그 램 평 가				
향 후 계 획				

[활동일지]

## ○○사업 자원봉사자 활동일지

일 시	장 소	활 동 내 용	학 인	
			자원봉사자	담당자

[슈퍼비전 기록일지]

## 슈퍼비전 기록일지

슈퍼바이저 성명			
직위			
일시		장소	
슈퍼비전 주제			
슈퍼비전 내용			
차기 슈퍼비전 계획			

■ 강의계획서, 강사활동기록부 양식

## ○○사업 강의계획서

사업명

교육목표

교육대상

세부프로그램내용

일정	장소	강의내용	세부추진사항	소요예산	준비물

# 강사 활동 기록부

<강사명 : >

강의일자	강의시간	강의내용	확인	
			강사	담당자
	~ ( 시간)			
	~ ( 시간)			
	~ ( 시간)			

- 참여대상자 명단, 출석부

## ○○사업 참여대상자 명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족사항	생활실태



■ 출석부

# ○○사업 출석부

2018년 ( )월

연번	성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지각	조퇴	결석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홍길동			○	○	×	×	×				○	○	○	○				
2																			
3																			
4																			
5																			
6																			
7																			
8																			
소계																			

※ 출석 : ○, 결석 : ×, 조퇴 : △





2021년 배분사업 수행안내

---

## 14. 자주 하는 질문



## 14. 자주 하는 질문

Q1) 사업 및 예산변경은 모두 모금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예산변경, 사업기간 연장 신청 공문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사업변경 및 예산변경 모두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문으로 작성하시어 수정사업계획서와 함께 모금회로 송부하고 아래의 기간 중에 모금회로부터 해당 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수행안내자료에 있는 변경 요청 문서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며, 문서에는 반드시 변경사유와 변경 전, 후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단, 예산변경의 경우 예외사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예외사항 : 세목 간 및 세목 내 기준금액 또는 비율 (\*500만원 이하 사업 및 500만원 초과 사업의 예산변경 기준 참조) 이하 변경의 경우에는 기관의 내부결재를 득하고 시행할 수 있음. 단, 기준금액 및 비율을 초과하는 세목 간·세목 간 변경이 발생할 경우, 목간전용 및 신규지출항목을 설정하는 경우 등은 모금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

※ 세세목간 변경은, 최종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세세목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

○ 사업 및 예산변경 가능기간(1년 사업 기준)  
- 사업종료 2개월 이전 (사업시작월 ~ 10개월까지)

※ 사업 및 예산변경 기간이 지나면 모든 사업 및 예산변경(기관 내부결재에 의한 예산전용 포함)이 불가함

Q2) 예산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목간 전용이고, 어떤 것이 세목 간 전용인가요?

아래의 예산항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		사업비			
항		공동모금회 "000사업" 사업비			
목	세목	세세목	계	산출근거	예산금액
인건비	전담인력	급여	14,500,000	1,000,000원*12월=12,000,000원	1,000,000
		4대 보험		125,000원*12월=1,500,000원	
		퇴직적립금		1,000,000원	
	소 계		14,500,000		14,500,000
사업비	심리정서 지원	사례관리위원회	2,100,000	사례회의비 100,000*3명*5회	1,500,000
		자기회복 프로그램		강사비(3급강사, 1시간)	600,000
		계		150,000원*2명*2회	2,100,000
	직업역량 강화	진로상담	10,000,000	전문 진로상담 50,000*20명*2회	2,000,000
		기초교육		분야별 아카데미 100,000원*20명*4회	8,000,000
		계			10,000,000
소 계		12,100,000		12,100,000	
관리운영비	사무용품	-	360,000	문구류 및 사업관련 소모품 30,000원*12월	360,000
		계		360,000	
소 계		360,000		360,000	
총 계					26,960,000

- 목간전용: 관-항-목 중 목에 해당하는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를 전용하는 경우  
(예: 관리운영비 내의 사무용품구입 예산 중 일부를 사업비 내의 교육비로 투입하는 경우)
- 세목 간 전용: 관-항-목 중 동일한 목 안에 있는 세목끼리 전용하는 경우  
(예: 사업비 내에 있는 '심리정서지원'의 예산 중 일부를 '직업역량강화'로 투입하는 경우)
- 세세목 간 전용: 관-항-목-세목 중 동일한 세목 안에 있는 세세목끼리 전용하는 경우  
(예: 사업비 내에 있는 '사례관리위원회' 예산 중 일부를 '자기회복프로그램'으로 투입하는 경우)  
(※ 최종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세세목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  
※ 세목 간, 세세목간 전용에 한해 건당 기준금액 및 비율기준(500만원 이하 및 500만원 초과 사업의 예산변경 기준 참조)이하의 기관 내부결재로 처리할 수 있음  
※ '목' 중 인건비의 경우 예산전용이 불가함.(잔여예산 발생 시 반납처리)  
※ '목간 전용' 및 '신규 세목 및 세세목 추가'시에는 모금회 승인필요

---

Q3) 단순일용직을 약 3개월간 투입할 예정입니다. 지급되는 급여가 많지 않고, 본인도 원하지 않는데 꼭 4대 보험을 공제해야 하나요?

---

단순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 보험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법에 의한 것으로, 모금회 지원사업의 경우 각종 관련법(세법,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Q4) (기타소득인 경우) 강사비, 원고료 지급시 15만원씩 2차례 지급하지 않고 한꺼번에 지급했을 경우도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

---

강사비 및 원고료 지급은 대표적인 기타소득 항목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의 60%까지 비용으로 인정이 되며, 12만 5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10만원씩 2차례 지급될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지급되는 총금액이 한 달 내에 12만 5천원 초과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8.8%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87조 1의2 (2019. 1.1 적용사항)

---

Q5) 지출시 반드시 기관 명의의 배분사업전용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하나요?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 명의의 배분사업전용체크카드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카드 결제가 가능한 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카드 결제가 어려운 업체의 경우, 기관 명의의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계좌이체를 통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은 3만원 이하의 소액 거래에 한해 사용 가능하나, 카드결제전표나 금전등록기 영수증 이용을 권장합니다.

---

Q6)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개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되나요?

---

사업비 현금 지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기관의 고유번호(사업자번호)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연말정산시 부당 소득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 현금지급시 현금지급(사용)사유서 첨부

---

Q7) (사업기간 중/ 사업 종료 후) 지원금 통장을 확인해 보니 이자가 발생 하였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이자수입은 각각의 경우마다 처리방법이 다르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 수입처리 후 지원금에 포함하여 사용
- 사업 종료 후 발생한 이자, 혹은 잔여 이자금액  
: 지원금 잔액과 함께 사업 종료 후 모금회로 반납
- 예외사항: 모금회에 사업비 잔액 반납 후 발생한 이자는 기관 수입으로 처리

---

Q8. 지출결의서 및 수입결의서는 모금회 양식을 이용해야 하는지요?

---

모금회에서 지정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 내부의 양식이 있다면, 기존에 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

Q9. 퇴직적립금은 어떻게 적립, 지급하면 되나요?

---

1. 퇴직금 적립

모금회 지원금으로 인건비 전액을 지원받는 수행인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1년 이상 연속 근무시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적립을 위해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야 합니다(기관의 퇴직금 적립통장이 있을 경우, 해당 통장을 사용 가능). 적립은 1개월 또는 12개월마다 할 수 있습니다. 1개월마다 하는 경우에는 수행인력 월 급여의 1/12을 매월 적립하여야 하고 12개월마다 하는 경우에는 수행인력이 근무한지 12개월이 된 월에 1개월치 급여를 적립하면 됩니다.

2. 퇴직금 지급

- 담당자가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 후 퇴사할 경우  
: 적립했던 퇴직금은 사업 종료 후 반납합니다. 단, 연차사업의 경우 1년 이전에 퇴직한 직원의 퇴직적립금은 반납하나, 2차년에 이어서 적립합니다.
- 1년 이상 근로한 담당자가 퇴사할 경우  
: 퇴직 시점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

Q10) 현금출납부의 작성 순서는 증빙일자를 기준으로 하나요?

현금지출을 기준으로 하나요?

---

단체가 작성해주는 서류 중 현금출납부, 증빙, 통장상의 금액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단체가 작성하실 경우, 통장상의 입출금의 순서에 따라 현금출납부를 작성하는 것이 작성하기가 수월합니다. 즉, 통장과 현금출납부 상의 일자는 일치해도, 증빙상의 일자는 불일치 할 수 있습니다.

Q11) 지출내역별로 기안문과 지출결의서 외에 추가로 구비해야 할 증빙들을 알려주세요.

대표적인 지출 건을 중심으로 구비서류를 안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번	항목	추가 구비서류
1	사업담당자 인건비	급여명세서, 국민, 건강, 고용보험 영수증(본인 부담금 표시된), 계좌이체 확인증 ※ 신규 채용시 근로계약서, 공채관련 서류 첨부
2	단순 인건비 (아르바이트 등)	활동비 지급증, 계좌이체 확인증, 근무일지 ※ 유급의 내부직원에게는 지급 불가
3	강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 강의 : 강사이력서, 강사비 지급증, 세금계산서 혹은 계좌이체 확인증</li> <li>온라인 강의 : 강사이력서, 온라인 강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혹은 계좌이체 확인증, 강의 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li> </ul>
4	회의비	회의록, 회의비 지급증, 계좌이체 확인증
5	자문비	수퍼비전기록지, 자문비 지급증, 계좌이체 확인증
6	자원봉사활동비	활동비 지급증(활동내역 및 산출근거 기재), 계좌이체 확인증
7	출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통 : 출장결과보고서</li> <li>교통비, 숙박비 : 카드매출전표 혹은 현금영수증</li> <li>식비, 일비: 지급증, 계좌이체 확인증</li> </ul>
8	자료집 제작	비교견적서(또는 전자견적, 입찰관련 서류),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증(세금계산서 수령시), 자료집 사진
9	물품제작/구입	비교견적서(또는 전자견적, 입찰관련 서류),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증(세금계산서 수령시), 구입물품 전체 사진
10	현수막 제작	카드매출전표 혹은 세금계산서, 부착된 현수막 전체 사진
11	비품구입	비교견적서(또는 전자견적, 입찰관련 서류),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매출전표, 비품관리대장 중 구매한 부품이 포함된 쪽 사본, 비품 사진
12	행사비 지출	카드매출전표 혹은 세금계산서

---

Q12) 재입금이 발생한 경우 결의서를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 건가요?

---

재입금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예전에 작성했던 지출결의서를 고쳐서 다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수입결의서(엑셀현금출납부 이용 기관) 또는 지출결의서(온라인회계시스템 이용 기관)를 작성해야 합니다.

- 수입결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수입결의서의 관, 항, 목은 당초에 작성했던 지출결의서의 관, 항, 목과 동일하게 기록하고, 비고란에 재입금이라고 표시합니다. 현금출납부의 유형은 재입금을 선택합니다.

-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수입결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작성하고 금액을 (-)로 작성합니다. 현금출납부 역시 (-)로 기재하고 유형은 인출(또는 송금)을 선택합니다.

※ 배분사업전용결제카드 부가서비스 기능 및 재입금 처리방법은?

○ (예시) SK주유소에서 주유 시 리터당 50원이 할인되며, 할인액은 주유 후 2-3일 내에 결제 통장으로 입금됨

- 회계처리방법 : 아래 두 가지 처리방법 중 택1

방법1) 수입결의서를 작성(비고란에 '재입금' 표기)하고 재입금 된 통장사본을 첨부함

방법2) 원 지출결의서의 금액을 빨간 펜으로 수정하고 날인한 후 비고에 캐쉬백 내용을 기록.

재입금 된 통장사본을 첨부한 것으로 갈음함

ex) 사업비(목)-실무자교육(세목)으로 출장비 주유비로 50,000원 구매 이후 2,3일 뒤에 500원이 할인되어 통장으로 반납 받았다면, 수입결의서 500원을 끊거나, 원 지출 결의서 50,000원을 빨간 글씨로 49,500원으로 수정한 후 사유를 명시하고 재입금 된 500원 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을 지출결의서에 첨부

---

Q13) 정액 출장비 등의 경우 수행기관의 지급기준과 모금회의 지급기준이 상이할 경우,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나요?

---

모금회의 예산편성기준표에서 정한 내역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의 기준보다 모금회의 기준이 우선되므로 모금회 배분사업 수행시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14) 비교견적의 경우, 조달업체가 제출하는 문서화된 견적서가 꼭 필요한지요?

---

만약, 비교견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업체가 제공하는 비교견적 대신 인터넷 상의 최저가 조회 등을 통해 단체가 구입한 물품의 금액이 저가로 구입하였다는 증빙이 제출되면 비교견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Q15)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간이영수증을 여러 장 발급 받아도 되는 건가요?

---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입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을 여러 장 발급받는 것은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간이과세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Q16) 현수막이나 자료집 등의 사진 제출 시 실제 구매 사진이 아닌 시안만 제출해도 되는 건가요?

---

제작물(자료집, 현수막, 홍보물 등), 기본 재산성 물품(책상, 카메라 등)은 반드시 실제 물품 사진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단, 소모품(다과, 문구류 등)은 총 50만원 미만의 경우 사진 생략이 가능)

---

---

Q17) 주관기관이 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참여기관으로 다시 지원 시 참여기관도 현금출납부를 작성하여야 하나요?

---

주관기관이 참여기관에 다시 배분하는 경우, 참여기관도 본 회의 규정에 따라 수입 및 지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현금출납부도 작성되어야 합니다.

---

Q18) 모금회에 잔여사업비를 반납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송금수수료를 제외한 사업비 잔액은 모금회로 송금하고, 반납공문 1부를 모금회로 송부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비 반납 공문에는 반납사유, 반납금액, 반납일자, 반납계좌 등 포함)

※ 잔액총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기관에서 잡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사업비 반납 계좌 : 농협은행, 301-0106-6930-2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전남

※ 반납계좌 변경시, 사업담당자가 각 기관에 안내드립니다.

---

Q19) 저희 기관은 모금회로부터 3년간 지원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1차년도 사업 종료 후 발생하는 잔여사업비는 이월하여 사용하면 되나요?

---

연속사업이라 할지라도 해당년도의 잔여사업비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1차년도 사업 이후 발생하는 잔여사업비는 반납하시고, 2차년도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

Q20) 나라장터 일반입찰과 나라장터 소액입찰은 무엇이 다른가요?

---

소액입찰은 소액수의를 의미하며 나라장터를 통하여 비교견적을 받는 수의계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를 통하여 입찰공고를 올리는 등 입찰과 유사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

Q21) 특수이해관계 거래에 해당하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아래과 같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관 대표의 친인척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배분금으로 임대료를 지출
  - 기관 대표 혹은 직원이 임원 또는 이사로 소속된 업체와 구매계약을 하고 배분금을 지출
  - 기관 대표 혹은 직원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출
- 계약금액이 적정 또는 저렴하거나 법적, 절차적으로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본회 배분사업에서 특수이해 관계 간 거래는 금지하고 있으니 사업 운영 시 유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수이해관계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모금회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